

월간

재정포럼

2023. May
Vol.323

05



권두칼럼

적자 재정정책 기조를 방치해도
괜찮은가?

| 이철인

현안분석

난제(complex problem) 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 성과관리

| 박노옥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이경영

정책연구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친환경 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3.05 Vol.323

월간 재정포럼 2023년 5월호 통권 제323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 02 적자 재정정책 기조를 방치해도 괜찮은가? | 이철인

현안분석

- 08 난제(complex problem) 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 성과관리 | 박노욱
- 36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이경영

정책연구

- 58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 최인혁·김정환
- 62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배진수·박정흠·김수현
- 66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 김현아·조희평
- 70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 장우현·김우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76 미국 - 친환경 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자 재정정책 기조를 방치해도 괜찮은가?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가속화하는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매년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가 5% 이상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부채가 매년 3.5%p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고통화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재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10년마다 국가부채 비율이 3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70년 부채 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93%에 이른다. 문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 재정운용 추세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가 백수십조 이상 계속되고 추경 편성이 반복되어도 무감각할 정도로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현재와 같이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적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재정적자를 통한 재원조달과 관련한 대표적 주장으로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를 꼽을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해 가구 또는 개인이 정부로부터 재원을 이전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미래에 갚아야 할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즉시 저축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따라서 정부가 포퓰리즘에 의거한 재정지출을 하든 그렇지 않든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반면, 이와 대척점에 놓인 신고전학파의 시각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중에 자금 부족이 발생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 즉 재정지출에 의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두 이론 간의 격차는 과연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축효과가 발생함을 보이는 연구가 다수이지만, 논쟁의 여지 없이 이를 엄밀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 남미 국가들의 재정운용 등의 사례에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가 초래됨을 목격한 바 있어 단순히 구축가설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도 무리라 본다.

중복세대 모형을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분석해 보면, 저축할 유인과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량이 감소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재정적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만 생존하는 중복세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면 이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만 고려하는 개인이라면 재정적자가 어떻게 발생하든지 간에 자신의 생존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재정지출의 혜택을 누리면 최선이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는 경제라면 개인은 재정적자에 의해 조달된 재정지출을 통해 높은 소비수준을 누리고 근로를 적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저축할 유인과 여력 또한 줄어들면서 투자는 점차 줄어들고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량이 감소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임금은 갈수록 정체되거나 감소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하락하고 저축할 여력도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두 세대도 가지 못해 어느덧 포퓰리즘에 의거한 재정지출 재원 마련조차도 하기 어려운 경제로 이행하면서 부채는 쌓이고 이자율은 천정부지로 치달는 경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어려워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재정적 물가이론에서 말하는 재정에 의해 미래 물가수준이 급상승하는 현상에 해당할 것이다. 결국 안정적 균형이 존재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달는 경제로 이행하고 만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개인 또는 가구가 자신의 후생만을 고려하고 미래세대 또는 사회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전제에 의존한다. 어느 정도의 세대 간 이타심을 허용하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시간이 늦춰지게 되지만, 재정수지 균형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이로 인해 단순히 소득의 감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이미 부채가 상당히 쌓인
시점에서는 미래 재정운용의
숨통을 옥죄어
재정정책을 세금을
가능한 더 걷으려는
문제로 전락하게 만든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되돌리려 하더라도 이미 부채가 상당히 쌓인 시점에서는 미래 재정운용의 숨통을 옥죄어 놓게 된다. 결국 재정정책을 세금을 가능한 더 걷으려는 문제로 전락하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조세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경제활동이 위축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수를 극대화하는 -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아니라 - 조세의 수준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초고령사회를 겪는 와중에 OECD 국가의 세율을 초과할 정도의 높은 수준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될 것인데, 과연 지속 가능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가 야기하는 재정위험과 유동성 문제

다음으로 부채 그 자체에 의한 재정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소위 재정위험이 급증하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재정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미래 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는 확신이 더 강하므로 재정위험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저축할 여력이 고갈되면서 일종의 쌍둥이 적자가 계속된다면 상황이 다를 것이다. 즉, 국제수지상 해외자금이 유입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겨우 맞춰놓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처럼 취약한 차입균형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투기자본을 포함한 국제자본업체와 공유되는 순간 경제는 일시에 파국으로 치달게 된다.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파운드화 폭락 사태, 남유럽·그리스 사태 등의 교훈을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에 의한 유동성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즉,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타깃으로 하는 금융정책 고수 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제발행에 따른 시중자금의 흡수를 통해 이자율 상승압력이 생겨나게 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국채를 인수하지는 않는데 이는 자칫 양적 완화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간접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인수를 포함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¹⁾ 여하튼 적자 재

1)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 필립스곡선의 평탄화 현상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대체로 무관하게 된다.

정운용에 따라 자산가격 거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는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²⁾

재정운용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끝으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적자 재정운용을 지속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채의 누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어느 순간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지균형을 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수지균형을 뒤늦게 달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암울한 세대 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현 재정운용 기조하에서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단순한 세 부담 증가는 세대 간 관점에서 현재세대도 어렵겠지만, 지속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미래세대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일시적 유행처럼 고령화·저출산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전되리라는 기대는 지난 20년 이상 계속되는 추세 속에서 깨졌다고 보인다. 세대 간 회계를 통해 산술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에 소득의 많은 부분(예: 60% 이상)을 부담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당연해 보이는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섬뜩한 함의가 유도된다. 보통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거나 늦지 않다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식이 좀 더 이른 시기에만 통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로 오랜 기간을 끌게 되면 이는 단순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영과 무관한 실질적 문제라 생각된다. 흔히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는 견해가 있지만 실상을 찬찬히 따져보면 이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재정운용에 관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해결이 어렵다고 계속되는 적자 재정운용을 방치하는 것은 더욱 감내하기 어려운 높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재정운용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KIF**

계속되는 적자 재정운용을 방치하는 것은 더욱 감내하기 어려운 높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 이러한 행태는 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났듯이 인플레이션 조세와 같이 현금을 시중에 살포함으로써 국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재정 및 금융정책 운용과는 차별화된다.



현안분석

+ 난제(complex problem) 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 성과관리

박노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이경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1

난제(complex problem)¹⁾ 해결을 위한 다부처 연계사업 성과관리²⁾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park@kipf.re.kr

I.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저하하는 역설적 상황이 OECD 회원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난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듯 다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 조직은 전통적인 수직적 관료 조직의 특성이 있어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조직에 따라 기획 및 집행되는 예산사업으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사업의 중첩·중복·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책무성 확보를 위해 다부처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고, 단일 부처 내에서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연결되는 위계구조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분야와 부문의 상위 구분이 별도로 있지만, 분야와 부문은 예산 배분의 추세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수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특정 조직이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다.³⁾

1) 사전에서는 통상적으로 complex와 complicated를 동의어라고 정의하지만, 경영이나 국제개발 영역에서 일부 학자들은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complicated problem(어려운 문제)은 복잡하고 풀기 어렵긴 하지만 해결 가능한 규칙이나 방법이 있지만, complex problem(난제)은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다양한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어 동일한 해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Andrew et al.(2015); Nason(2017) 등).

2) 본고는 박노옥(2021)을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연계사업을 식별하여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토니블레어 내각은 공공서비스 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과 전달팀(Delivery Unit)을 통해, 단일 부처 성과관리에서 출발하여 30개의 다부처 목표를 관리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운영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정되어 확산되었다. 2021년 기준 80개국에서 142개의 사례가 발견되었다(Mansoor et al., 2021).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 수립된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을 보완 개정하여, 「정부성과관리 현대화법」(GPRAMA 2010: GPRA Modernization Act)을 통해 신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범정부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0년대 중반 뉴질랜드의 결과 프로그램(Results Programme)은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부처 관점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어젠다로 범정부적인 정책 관점을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국제기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예산(Green Budgeting), 성평등을 추구하는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물질적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웰빙 관점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ing) 등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다부처 연계사업 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혁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편작업 중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부처 프로그램의 설정과 관리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0년과 2021년에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예산’ 편성을 권장하고 유인을 제공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은 다부처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시범 추진을 위해 협업예산을 대상으로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아직은 체계화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일부 사업군이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부처 사업 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가진 대부분 국가가 다부처 프로그램을 수립·관리하지 않고 있다. 예산편성 및 관리의 단위 자체를 정부 예산구조 자체에 심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다부처 사업 관리는
다른 조직과
일한다는 점에서
간접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설득과 협상에 기초한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관리의 성격을 포함한 성과관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행정부 전체 관점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 영역에서 다부처 사업군의 성과관리와 평가가 추진되었다.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같은 범정부적 정책 목표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다.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와 협업이 중요해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다수 부처의 업무 영역을 아우르는 난제(complex problem)의 해결 필요성 증가
- 비용 절감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다수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증가
- 업무나 시스템의 중복·분절·중첩 등의 문제 완화 필요 증가
- 국민에게 일관된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 제공 필요 증가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통 플랫폼이나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증가

본고에서는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협업의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접근법 및 국외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다부처 사업 관리의 장애요인과 극복 노력

1. 다부처 사업 관리의 장애요인

다부처 사업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단일 부처 사업 관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관리 과정에 공통적 역량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성과 역량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 재원의 지속적 확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및 갈등 해소 구조를 수립하는 능력,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공통 역량으로 꼽을 수 있다.

다부처 사업 관리는 다른 조직과 일한다는 점에서 간접 관리(indirect management)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설득과 협상에 기초한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의 수립도 필요하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 역할 분담, 성과관리 시스템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부처 사업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조직을 넘어서는 권한, 정당성 및 신뢰도의 유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일 부처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가보

4) 2010년부터 사회문제 해결형·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치고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까지의 연계 활동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은정 외, 2016).

다 협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가능하다. 다부처 사업 추진에는 단일 부처 사업 추진보다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부처 협업의 장애요인으로는 ① 행정 조직의 수직적 구조(stovepipe), ② 정부를 통제하는 입법 구조, ③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④ 공동재원 활용을 어렵게 하는 예산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행정 조직의 수직적 구조로 인해 개별 조직 내의 사업과 업무를 통해서 개인이 성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유인체계가 거의 없다. 항상 개별 조직의 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부처 연계사업 추진 경험을 살펴보면 기획은 다부처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예산확보 및 집행 과정 등에서는 결국 단일 부처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 정부를 통제하는 입법 구조가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입법부에서 정부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개별 조직에 주어진 임무와 예산사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다부처 연계사업 관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의 개별 조직들이 다부처 연계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유인을 가지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입법부는 협업 관련 책무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단일 부처 입장에서 협업 관련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협업의 유인 확보가 어렵다. 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부처 연계사업에 대응되는 책무성 확보 방안 없이는 결국 단일 부처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재원 활용을 어렵게 하는 예산구조도 장애요인이다. 예산 자체가 단일 부처와 사업에 연계되어 편성되고 집행되는 구조이므로,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설정하더라도 결국은 단일 부처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들이 편성되고 집행된다. 협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재원의 편성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사무국)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30여 년간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 구조를
심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단들이
전통적 관료 조직의
구조를 기반으로
부가적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2. 다부처 사업 장애요인 극복 노력

가. 행정부의 수직적 구조 극복 노력

첫 번째 협업 장애요인인 행정 조직의 수직적 구조(stovepipes)의 극복을 위해 최근 30여 년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 구조를 행정 조직에 심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시장과 계약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네트워크, 파트너십, 협업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운 수단들은 전통적 관료 조직의 구조를 기반으로 부가적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부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수직적 관료 조직으로 개별 조직의 자율성과 권한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중앙 조직이 부처별 업무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범정부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다([그림 1] 참조).

둘째, 공통의 목표와 절차를 수립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시도하는 모델로 단일 부처의 사업 영역 중 일부가 중첩되고, 중첩된 영역에서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그림 2] 참조).

셋째, 조직 간 협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모델로 부처별 영역을 강조하기보다는 협업이 일상화된 조직 구조이다. [그림 3]은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25개 부처의 실제 협업 사업의 연결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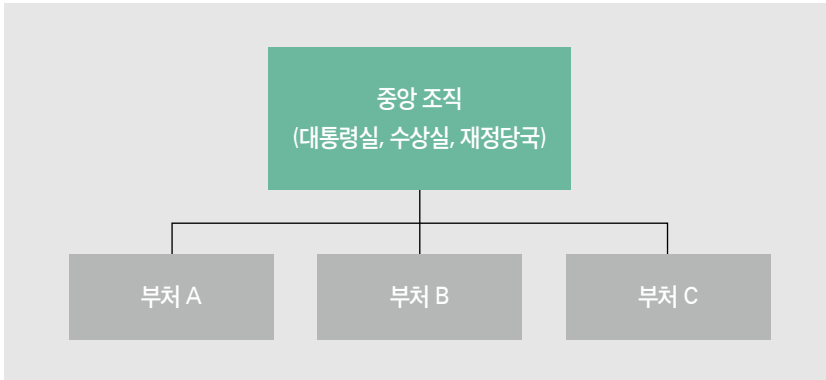
첫 번째 모델은 전통적 행정 조직 구조로, 협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대통령실·수상실이나 재정당국과 같은 중앙 조직이지만, 하향식의 일방적 개입을 통해 협업을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협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 조직이 사업 부처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유인구조 수립과 지식 공유 등과 같은 촉매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첫 번째 모델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유형의 모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개별 조직보다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이 더욱 크며 개별 조직에도 유익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조직 간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개선

두 번째 협업 장애요인은 입법 과정의 혼돈된 메시지로,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최근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협업을 촉진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조직의 권한과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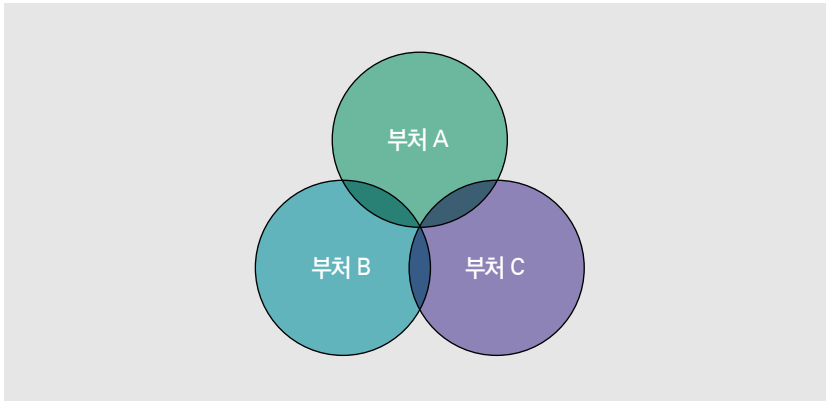
[그림 1] 행정부의 조직구조 1(수직적 관료 조직형)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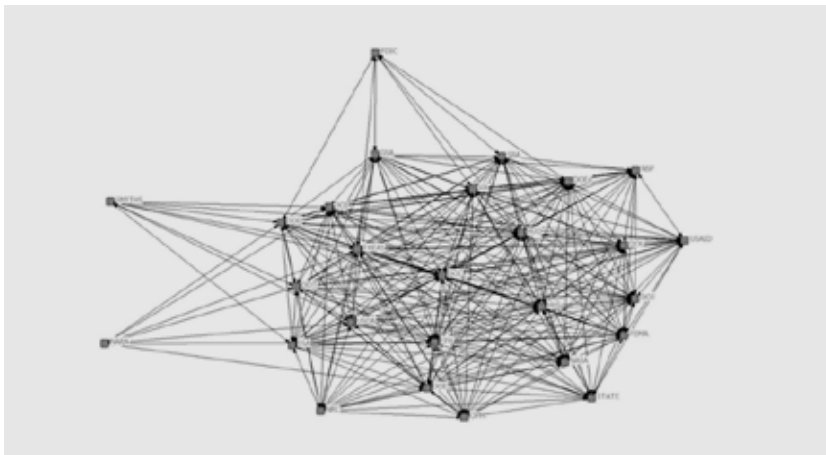
효과적인 협업 추진을 위해 수직적 관료 조직이 아닌 중앙 조직이 사업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유인구조의 수립과 지식 공유 등과 같은 촉매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그림 2] 행정부의 조직구조 2(부처 간 협업형)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행정부의 조직구조 3(사업 기반 협업 네트워크형)



출처: Fountain(2013), p. 15. 그림 인용

행정부 자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시도와 더불어
입법부의 이해와 지지가
수반되어야만
단일 부처 책임자들이
협업 사업이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부 활동이 작동하고 있다.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업 활동에 대한 법적인 기반에 근거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협상, 계획, 그리고 절차에 근거하여 협업이 시도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아직은 입법부와와의 관계에서 협업 관련 어젠다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개선

세 번째 협업 장애요인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전통적인 행정 조직의 책임성은 개별 조직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이며, 협업 사업과 정책의 책임성 소재는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협업 사업 및 정책에 책임 부처나 책임자를 지정하는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단일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협업 사업과 정책의 추진에는 실험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협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업이나 정책의 내용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적으로 책임 소재를 단일 부처에 명확히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뉴질랜드가 범정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10개의 결과(Results)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추진한 사례에서,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 수립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과 환류가 성과 창출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협업 사업이나 정책 추진 계획 수립 시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설정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입법부의 이해와 지지가 수반되어야만 단일 부처 책임자들이 협업 사업이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라. 예산제도의 개선

네 번째 협업 장애요인은 공동재원 설정과 활용을 저해하는 예산제도이다. 예산은 단일 부처의 개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개별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만 하므로, 협업 사업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업 사업의 계획과 개별 사업의 연계라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 프로그램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경우, 단일 부처의 개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용도는 대부분 제한적이며, 시너지 발생이 가능하더라도 타 부처 사업을 돕기 위한 용도의 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사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 간 연계 또는 재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사업의 규모나 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 어렵다. 사업의 수혜 조건이나 지출 기준이 상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혜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통합적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체제에서는 사업효과 외부성의 내재화가 어렵다. 특정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 대상자에게 혜택을 창출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재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주택이나 노후 주택의 화장실 개선을 통해 노인의 낙상을 감소시키면 국민건강보험 지출이나 기타 노인보건 지원 프로그램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주택 담당 조직인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러한 혜택이 부처에 내재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과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협업 사업이나 다부처 사업을 사전적으로 기획하더라도, 공동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지출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공동재원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재원 자체를 별도의 단위로 편성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할 수도 있지만, 예산 당국과 입법부의 이해와 지원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존중하고 편성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는 단일 부처의 개별 사업 예산이지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업과제를 명시화하고 이와 연관되어 개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는 땀기(braiding)라고 불리며, 개별 사업의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개별 사업별 결산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협업예산도 이 형태에 해당한다. 협업예산과 같이 다수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여 상향식으로 다부처 연계사업이 기획될 수도 있고, 하향식으로 중앙 조직이 기획하여 관련 부처의 예산을 묶어서 협업의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단일 부처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블렌딩(blending)으로 불리는 시도이다. 공동재원 자체를 별도의 예산편성 단위로 설정하고, 다양한 개별 사업 재원에 기여하는 구조를 수립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예산구

단일 부처 사업 예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업과제를 명시하고 개별 예산을 적극 반영하면 개별 사업의 독립성이 유지되며 사업별 결산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부처 연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관계관리 역량,
관리절차 수립과 운영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동재원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 이 경우 개별 사업별로 별도의 정산이나 성과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재원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성과평가와 개별 사업별 재원 기여와 집행에 관한 보고만 이루어진다.

3. 다부처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

다부처 연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관계관리 역량, 관리절차 수립과 운영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다부처 연계사업의 성과관리에 초점이 있으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경영역량 부분보다는 다부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나 시스템 수립과 운영 관련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협업을 위한 절차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
- 협업 조직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 협업 조직 간 협약(agreement)의 공식화
- 협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공통의 운영 절차 또는 조직 수립
- 협업과제를 위한 적절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의사소통 채널의 수립
- 추진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추진 계획 및 내용의 지속적인 수정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과(shared outcome)는 국민 입장에서 다수의 공공 조직 개입과 외부 요인에 의해 경험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공동의 결과를 관리(manage)한다는 것은 다수의 조직이 협업(collaboration, joint work)을 통해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결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이라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별 조직이 각자 결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다수의 조직이 협업하는 경우가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공동의 결과 창출을

위해 더욱 우수한 방법이라는 근거와 협업 방식이 사전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2년에 수립·추진된 뉴질랜드 정부의 10개 공동 결과의 거버넌스 구조와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Scott and Boyd, 2015)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협업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협업에 관련된 핵심 조직의 수효가 많을수록 협업 추진이 어려우며, 3개 이상 조직이 핵심 조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조직이 협업할 경우, 성과 창출에 핵심적인 조직을 3개 이내로 구성하고 다른 조직은 필요에 따라 협업을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을 기획·실행·관리할 수 있는 조직(사무국)이 필요하

협업을 추진하려면
협업이 공동의
결과 창출을 위한
더욱 우수한 방법이라는
근거와 협업 방식이
명확해야 하며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1> 뉴질랜드 협업 성과(2012~2017)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결과

구분	협업과제 관리의 주요 요소
분명한 성공 요소	협업을 위한 핵심 조직의 수효
부분적(probable) 성공 요소 ¹⁾	이미 존재하는 조직 간 협업 관련 관계
	장관회의와 협업 조직의 연계
	의사결정의 다층적 구조(cascading governance) 수립
	공동 사무국
잠재적(possible) 성공 요소 ²⁾	Quick Win ⇒ 협업 초기에 빠른 성과를 창출하여 추진 동력 확보
	합의된 성과측정 기준
	결과와 성과목표의 연계
영향력이 미약한 요소 ³⁾	중앙 조직의 관여
	시드 펀딩(seed funding) ⇒ 결과목표 9와 10의 경우, 시드 펀딩이 제공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협업부처 내 자체 펀딩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다른 결과 목표들은 시드 펀딩을 신청하지 않았음
	구체적 전략과 청사진 수립
	고위 의사결정자 간의 잦은 회의(frequent meetings of chief executive steering groups): 매월(Results 1~4) 또는 분기별(Results 5~10) 회의가 이루어졌음 ⇒ 중간 매니저, 현장 관계자 등의 층위별 정보가 취합되어 고위 의사결정자 회의에 반영되는 것이 고위 의사결정자 간의 잦은 회의보다 중요한 것으로 관찰됨

주: 1) 협업 성과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 요소

2) 협업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찰되지는 않은 요소

3) 영향력이 미약한 요소의 경우 협업 목표의 난이도와 복잡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요소들이 영향력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출처: Scott and Boyd(2015), p. 8, Table 4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5) 뉴질랜드의 공동 결과 프레임워크 추진 시 별도의 공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지 않고, 개별 목표별로 관련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협업 구조를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개별 목표의 달성 정도와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Scott and Boyd(2015)가 보고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서비스 협약은 1998년 600개의 정책 목표로 시작했으나, 점차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규모를 감소시켜 2007년 30개의 다부처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며, 사무국이 공동 사무국일 경우 협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보다는, 협업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성과 창출에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법이 비교적 분명할 경우 사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난제로 꼽히는 문제는 사전적 해결 방안이 분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므로, 추진 과정에서 학습과 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다.

Ⅲ.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사례

1. 영국의 공공서비스 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영국의 PSA는 1998년 시작된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서 도입되었다. 1997년 노동당으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중기적 시계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s, SR)를 도입하는 등 재정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1998년 CSR이 최초 공개되었으며, CSR·SR⁶⁾에서는 향후 3년간의 부처별 지출한도(DEL)⁷⁾를 설정하였다. 3개년의 다년도 지출권한과 강화된 자율성에 따라, 부처는 해당 CSR·SR에서 설정한 3개년 동안 PSA 형태의 명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1998년 11월 최초의 PSA가 공개되었으며, 2010년 PSA가 폐지될 때까지 다섯 번⁸⁾의 PSA가 발표되는 동안 그 형식도 상당히 진화하였다. 최초 PSA는 600개의 정책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규모를 감소시켜 2007년 CSR에서는 30개의 다부처 정책 목표⁹⁾를 설정하였다. 2007년까지 PSA는 기본적으로 단일 부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일부 PSA만 다부처 목표였다. 그러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다부처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의 수도 축소되고 다부처 협업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둔 제도로 발전하였다.

PSA는 원대한 목표에 비해 추진을 위한 리더십 확보는 미약했고 제도 운영

6) CSR과 SR의 차이점은 CSR이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적 검토라면, SR은 기존 우선순위에 대한 점진적인 변경이라는 점이다.
7)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며, 부처가 3년 동안 재정지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말 이월권한(end-year-flexibilities)이 제고되었다.
8) CSR 98, SR 00, SR 02, SR 04, CSR 07
9) (CSR 98) 600개 → (SR 00) 160개 → (SR 02) 130개 → (SR 04) 110개 → (CSR 07) 30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지만, 2001년 선거 이후 공공서비스 관련 의제를 장악하려는 총리의 열망에 힘입어 전기를 맞았다. PSA의 운영 경험을 통해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제한된 수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PSA의 접근법이 하향식 통제 방식이라는 비판에 대응하여 2004년에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7년 다부처 PSA로의 전환은 정부의 성과관

영국은 PSA 운영 경험을 통해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제한된 수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협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표 2> 각국의 전달팀(Delivery Unit) 수립 사례

지역	국가	조직명 또는 법·규정	수립 연도
북아메리카	미국 메릴랜드주	Governor's Office of Performance Improvement	2015
	캐나다 온타리오주	Strategy & Results Branch	2008
	미국 연방정부	GPRAMA 「정부성과관리 현대화법」 2010	2010
	캐나다 연방정부	Results & Delivery Unit	2016
유럽	영국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2001~2010
	영국	Implementation Unit	2012
	세르비아	Delivery Unit	2015
	루마니아	Delivery Unit	2014
	알바니아	Delivery Unit	2013
아시아·호주	네덜란드	Delivery Unit	2006~2010
	인도	Delivery Monitoring Unit	2009
	인도네시아	UKP4	2009
	파키스탄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2015
	말레이시아	Performance Management Delivery Unit	2009
중동	호주	Cabinet Implementation Unit	2003
	요르단	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2015
	사우디아라비아	Central Delivery Unit	2016
중남미	오만	Tanfeedh Delivery Unit	2016
	콜롬비아	Unidad de Ejecución	2015
	코스타리카	Centro de Gestión de Gobierno	2015
	과테말라	Equipo de Prioridades Presidenciales	2016
아프리카	페루	Unidad de Cumplimiento de Gobierno	2016
	남아프리카	Delivery Unit	2016
	가나	Presidential Delivery Unit	2015
	케냐	Presidential Delivery Unit	2015
	세네갈	Presidential Delivery Unit	2014
	라이베리아	Program Delivery Unit	2010

출처: Gold(2017)를 기반으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보완하여 저자 작성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서비스 자문그룹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달성에
공동 책임을 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운영하였다.

리 제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였다. 다만, 이 야심찬 실험은 2010년 시작된 새로운 연립정부에 의해 조기 종료되었다. 그러나 PSA 성과관리 전담기관인 수상실의 전달팀(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PMDU)¹⁰⁾의 접근방식 및 수단은 실행팀(Implementation Unit)으로 계승되었으며,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성과관리 조직 모델은 현지화 과정을 거쳐 6개 대륙에 전파되었으며, 최근 설치 사례가 <표 2>와 같이 증가하였다.

2. 뉴질랜드의 결과 프로그램(Results Programm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뉴질랜드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예산 제약 내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1년 행정부는 공공 부문의 협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였다. 공공, 민간, 비영리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자문그룹(Better Public Services Advisory Group)을 구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자문그룹은 정책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보다 '특정 결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동원되는 새로운 방식'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 PSA의 마지막 단계의 접근법과 동일하다.

공공서비스 자문그룹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여러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달성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용하였다.

내각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중요한 결과목표(Outcome Goal) 10개를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각 과제의 책임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표 3>의 사례와 같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 결과목표는 12개월 이상 구직지원금을 받는 수혜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목표였으며, 협업부처는 사회개발부, 보건부 그리고 교육부였다. 사회개발부는 구직자의 사례관리, 보건부는 구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련 장애요인 해소, 교육부는 구직에 있어서 교육 및 훈련 관련 장애요인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

10) 전달팀(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Delivery Unit)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돕는 것이다. 수상에게 직접 공공서비스 협약 목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달팀은 공공서비스의 이행을 평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재무부, No. 10(영국 수상실), 내각부의 다른 부서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일하며, 재무부와는 공동의 공공서비스 협약 목표 달성 책임(responsibility)을 지고 있었다. 전달팀은 공공서비스 협약의 주요 분야별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직 공공서비스 협약의 이행 관리 업무만 전담하였다.

<표 3> 뉴질랜드 결과목표

Results #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목표(Outcome Goal)
1	12개월 이상 구직지원금을 받는 수혜자의 수 감소
2	조기 유아교육 참여율 제고
3	유아 예방 접종률 제고 및 류마티스 열 발병률 감소
4	아동학대 감소
5	고졸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보유한 18세의 비율 제고
6	상급 자격증, 졸업장 및 학위를 소지한 25~34세의 비율 제고
7	전체 범죄율, 강력범죄율, 청소년 범죄율 감소
8	재범률 감소
9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 지원의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10	전자정부 활성화

출처: Scott and Boyd(2017), p. 13, Table 1.

을 담당하였다. 사회개발부의 사례관리는 직접적으로 구직급여 수혜자 수 감소에 기여하지만, 구직의 장애요인인 건강과 직업능력 문제 해소가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사회개발부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구직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구직자를 보건부나 교육부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하였다.

두 번째 결과목표는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로 협업부처는 교육부, 마오리족부(Ministry of Māori Affairs), 그리고 태평양양민종부(Ministry of Pacific People)였다. 교육부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유아교육 참여도가 낮은 소수 인종에 대한 홍보 및 아웃리치(outreach)는 소수 인종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형태의 협업체계였다.

세 번째 결과목표는 유아 예방 접종률 제고 및 류마티스 열 발병률 축소였다. 협업부처는 보건부, 사회개발부, 태평양양민종부(Ministry of Pacific People)였다. 보건부가 예방접종을 하고 류마티스성 열병을 조기 진단 및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류마티스성 열병의 주요 발병 요인은 주거환경 문제에 있으므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사회개발부가 수행하고 보건부와 정보를 공유하였다. 태평양양민종부는 해당 열병의 발생도가 높은 태평양양민종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며, 보건부 및 사회개발부와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열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더 나은 공공서비스 결과 프로

예를 들어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라는 결과목표를 위해 교육부, 마오리족부, 태평양양민종부가 협업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과제에 대해
뉴질랜드 내각은
결과 및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통계청이 평가지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상황은
6개월마다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림(Better Public Services Results Programme 또는 the Results로 축약)’이라고 지칭하였다. 각 과제에 대해 내각은 결과(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및 목표(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달성할 변화의 정도)와 성과지표(변화를 평가하는 방법)를 설정하였다. 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인 뉴질랜드 통계청은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다. 각 지표의 달성 상황은 내각에 보고되고 6개월마다 일반에 공개되었다.

동시에 내각은 과제별 주무장관을 임명(10개 과제에 대해 5명의 주무장관 임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시도된 접근법이지만,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자원과 관련된 책임만을 지는 경향이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시도였다.

정부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위원장은 차후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특정 결과의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는 수석 행정관을 임명하였다. 이후 이 시스템은 특정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다부처 과제의 수석 행정관이 목표 달성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도록 발전하였다. 다만, 내각은 이러한 수석 행정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계획 수립 및 관리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결과목표마다 다양한 형태의 협업체계가 시도되었다.

Results Programme으로 선정된 10개 결과목표는 모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결과목표인 12개월 이상 구직지원금(Jobseeker Support Benefit)을 받는 사람의 수효는 30% 감소하였다. 유아교육 참여율은 94.7%에서 98%로 증가하였다. 출생 후 8개월 내 예정된 모든 예방접종을 받은 영아의 비율은 83%에서 95%로 증가하였으며, 류마티스 열 발병률은 10만명당 4.3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다.

3.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 관리 추진 노력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성과관리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예산편성, 집행, 성과관리 및 평가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재정사업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노력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협업예산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명시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중요한 예산편성 및
관리의 단위로 인식한
첫 번째 노력이었다.

가. 2022년 협업예산 신규 중점과제 성과관리 시도

다부처 재정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 처음으로 협업예산이 도입되었다. 사업 부처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관련 사업 간 협업을 명시화하여 예산을 신청하면, 재정당국은 해당 예산 요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도입되었다. 협업예산 규모는 2020년 7.1조원에서 2021년 9.4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다. 다만, 이러한 협업예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2022년부터 중지되었다.

본고에서 단기간 존재한 협업예산을 소개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명시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중요한 예산편성 및 관리의 단위로 인식한 첫 번째 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협업예산의 성과관리 방안까지 모색한 노력이었다.

재정당국이 연구용역과 내부 논의를 통해 계획한 성과관리 방안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협업과제를 중점과제와 기타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었다. 중점과제란 중요도가 높아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서, 예산 요구 전에 잠정 선정하고 편성과정에서 중점 관리할 예정이었다. 기타과제는 부처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재정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과제로서, 주관부처 중심으로 자율 관리할 예정이었다. 2022년 협업예산 중에서 중점과제는 17개 과제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협업예산 중점과제 17개 중에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었다.

〈표 4〉 2022년 협업예산 중점과제 중 시범 성과관리 사업군

과제명	주요내용	주무부처	협업부처	협업유형
글로벌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트렌드에 맞춰 의료기기·신약 개발 고도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중첩·분절 문제 해소
아동학대 방지	재정효율화를 위해 회계기준 및 지원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법무부	공동인프라 형성 중첩·분절 문제 해소
미래 차 개발·보급	미래 차 TF를 통해 R&D·인프라·보급 협업체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	장애요인 해소 공동인프라 형성
시스템 반도체 성장 생태계 조성	K반도체 전략에 맞춰 기술개발·인프라·인력 분야 협력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	중첩·분절 문제 해소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22대 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15개	공동인프라 구축 중첩·분절 문제 해소

출처: 저자 작성

‘2022~2026 제1차 재정사업 성과관리’에는 범부처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목적의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아동학대 방지, 미래 차 개발·보급, 시스템 반도체 성장 생태계 조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성과관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성과관리의 기본적 틀은 다음과 같다.

- 다부처 협업예산 요구자료 제출을 5월 말에 예산실에 제출한다.
- 성과계획서에 협업예산 관련 계획 포함하여 6월 말에 재정관리국에 제출한다.
- 협업과제 관리를 위한 조직(위원회)과 재정 관리점검 회의에서 월별·분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 차년도 3월에 생산되는 성과보고서에 협업예산 관련 성과 보고를 포함한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관련 사업 현황 진단
-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결과의 측정 기준(성과지표 및 목표치)
⇒ 주무부처가 총괄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를 대표하는 통합지표
- 협업부처 간의 역할 분담(책임부처 및 협업부처의 역할 분담)
- 단일 부처의 실적 또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성과지표 및 목표치)
⇒ 협업과제에 관련된 분야 부처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분야지표를 설정하고 담당 부처와 명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계획
-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 관련 지표 설정
⇒ 협업과제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 외에, 협업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장애요인, 인프라 구축, 사업 간의 중복 및 분절화 문제 해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적 등을 협업지표로 설정
- 협업 성과의 종합적 평가 계획(성과지표와 더불어 사업평가 기법의 종합적 평가 계획)
- 협업의 거버넌스(협업과제 관리를 위한 협의체 또는 조직)

이러한 협업 사업의 성과관리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2023년부터는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로 초점이 옮겨갔다.

나. 2023년도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2022년도에 수립된 ‘2022~2026 제1차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목적은 범부처 핵심 재정사업

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한다는 것이다. 5년간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12개의 핵심사업(군)을 관리할 계획이며 12개의 과제 중 3개만 단일 사업이고, 나머지 9개는 다수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군이다.

핵심사업(군)은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②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③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 계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④ 생활물가 안정 지원(농축산물 할인쿠폰, 수산물 할인쿠폰), ⑤ 지역균형발전(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⑥ 반도체 초격차 확보(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⑦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핵심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⑨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창업성장기술 개발,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산불대응능력 강화), ⑪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⑫ 국격 외교역량 강화(기후변화 ODA 사업)로 구성되어 있다.

중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부처 사업군의 경우 협업과 관련된 쟁점의 식별이나 관리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군의 경우 여전히 개별 사업별 관리의 초점이 강하다.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군의 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군 내의 다른 과제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정책을 포괄적으로 중기적인 시계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정책 영역 내의 개별 사업을 매년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다부처 사업의 성과관리를 초점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과제와 연계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상승(elevation) 경로는 수립되었다는 강점이 있다. 다부처 사업 관리에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부 내 최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개입 과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이 추가 반영되어 관리체제가 수립되고 운용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체제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협업 내용의 유형화를 통해
다부처 사업을 포괄하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업 내용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관리할 수 있다.

IV. 다부처 사업 관리를 위한 협업의 유형화

1. 다부처 사업 유형화 필요성과 논의 배경

본 절에서는 다부처 사업의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 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협업 방식을 유형화하는 이유는 단일 부처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다부처 사업 단위로 협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협업 내용의 유형화를 통해 다부처 사업을 포괄하는 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협업 내용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특별히 유형화한 경우를 찾기는 어려우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들을 식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다부처 연계사업을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협업예산’ 추진 과정에서 협업예산을 유형화하였지만, 개별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다부처 사업을 부처의 역할에 따라 협업예산에서 유형화하였지만, 개별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한계가 있었다. 2020년의 12개 협업예산은 전문적 분업형, 주기별 협력형, 시스템 협력형, 수요자 맞춤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전문적 분업형은 단일 부처가 각각의 영역을 전문성에 따라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기별 협력형은 단일 부처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순차적인 과제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스템 협력형은 특정 부처가 전체 시스템 관련 기획을 담당하고, 협업 부처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은 단일 부처들의 동일 목적 사업 중 다양한 하부 메뉴들을 제공하고, 수요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해당 하부 사업을 선택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의 부처 역할에 따른 유형화는 어느 정도 상호 배타적으로 부처의 협업 형태를 유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협업 형태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모든 유형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 부처는 필요하므로, 시스템 협력형에서만 전체 사업들을 마련하는 책임 부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인력양성의 경우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기술 수준에 따라 부처가 분업하는 전문적 분업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특정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기술 수준과 훈련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며, 훈련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가 기술 수준이나 훈련 대상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시스템 협력형과도 유사하며, 수요자 맞춤형과도 유사한 형태의 협업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사업 추진은 단일 부처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기별 협력형도 시차를 두고 사업이 추진된다기보다는 기초연구, 임상, 사업화 등이 해당 영역의 기술별로 다양하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 협업 형태의 유형화를 부처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유형 간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문제 해결 방식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협업 사업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2. 협업의 유형화 방안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이 실제 성과관리 강화에 있어서 유용하다. 단독으로 일하는 것보다 협업에 더욱 많은 비용(시간, 자원, 노력 등)이 발생하므로, 협업이 더욱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는 논리가 명확해야 한다. 기존의 부처별 사업보다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더욱 효과적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협업을 통한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 필요한 성공요소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협업 유형화의 첫 번째 방안은 장애요인 해소형으로, 해당 사업 성과 창출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 영역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신산업 인력양성의 경우 대학의 교육역량 및 해당 분야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단기적 직능의 경우 기존 직능프로그램에 신산업 분야 기술 포함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이고, 협업부처는 교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이
실제 성과관리
강화에 있어서 유용하다.

거버넌스 구축 유형은
재원과 사업의 융합을 통해
재원 규모 확대와
사업 추진의 공간 확보
효과 창출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볼 수 있다.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특정 취약계층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아웃리치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협업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처이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 활동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담 및 취업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용형이다. 공동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통해 성과 창출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유형이다. IT 시스템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공유를 통해 비용 절감과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로, 윈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비스들의 제공 창구를 통합해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 고용센터를 창구로 설정하여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 방안은 중첩 및 분절 문제 해소 유형이다. 협업을 통해 병렬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중첩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개별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제를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병렬적 과제 간 중첩 및 분절화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 진단에 근거한 목표 설정 및 예산배분이 주된 목적인 협업유형이다. 예를 들어, 탄소저감 과제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병렬적 하부 정책 영역별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다. 탄소저감을 위해 하부 영역별 기여가 별도로 있다. 다른 예로, 신산업 인력양성의 경우 신산업 분야별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협업예산 과제로 추진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간 중첩 문제 해소 및 인력양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은 거버넌스 구축 유형이다. 재원과 사업의 융합을 통해 재원 규모 확대와 사업 추진의 공간 확보 효과 창출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는 설정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역할 분담은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기 힘든 경우이다. 관련 부처와 사업 간의 약한 연계(networking) 체제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경우이다. 재원 풀링을 통해 사업 규모 확대 및 실험적 사업 내용을 추진해 나가며 사업 개발을 통한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협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창출된 성과를 특정 부처나 사업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크레딧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V.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영국의 전달팀(Delivery Unit), 미국 연방정부의 다부처 핵심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성과관리, 뉴질랜드의 결과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인 기획과 실행을 위한 요건과 성과 관리에 관한 제언을 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략적 선정
-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 협업 과정의 효과적 관리
- 협업을 통한 성과의 주기적 보고와 정보 공개
-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 수립과 운영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숫자를 줄이고
범위를 좁혀
관련 부처들이 보다
초점을 가지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

1. 전략적 목표 선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략적 선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숫자를 줄이고 범위를 좁혀 관련 부처들이 보다 초점을 가지고 협업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하는 목표의 수효를 10개 내외로 국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뉴질랜드의 결과 프로그램은 10개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영국 PSA도 초기 600여 개의 목표에서 30여 개의 다부처 목표로 변화하였으며, 미국의 다부처 성과관리 대상도 10여 개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평가도 초기에는 80개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대상 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에서는 12개의 사업(군)으로 관리 대상을 축소하였다. 대부분의 정부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다 명확한 소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선정 시 사업 부처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부처의 주인의식을 확보해야 한다. 다부처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선정

중간결과 지표는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결과지표와 정부의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변화 가능한 산출지표를 균형 있게 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은 하향식과 상향식 과정이 적절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급적이면 협업 경험이 있는 문제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부처 사업 추진 초기에는 이미 협업 경험이 있는 정책 영역을 선정하여, 기존에 축적된 조직 간의 신뢰와 협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빠른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다음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중간결과를 지표로 활용하여, 협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의 정도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중간결과 지표는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결과지표의 장점과 정부의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변화 가능한 산출지표의 장점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급적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 6개월 정도 후에는 그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중간결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과지표 설정 시, 사업의 개입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간의 적절한 간극이 중요하다. 사업의 개입과 성과지표의 변화 간 시차는 사업의 개입과 사회적 변화 발생 간의 시차(performance lag)와 사회적 변화 발생과 변화 측정 간의 시차(measurement lag)로 인해 발생한다. 성과 시차(performance lag)는 적절한 지표 선정을 통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측정 시차(measurement lag)는 관련 부처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목표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에 10개 결과 영역의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10개 다부처 결과의 성과정보를 6개월마다 발표하여 관련 부처들이 압박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다부처 사업 추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분기별 성과정보와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표 5> 산출·중간결과·최종결과 지표의 예시

뉴질랜드 the Results	산출 예시	중간결과 예시	최종결과 예시
조기 유아교육 참여율 제고	조기 유아교육 제공 기관의 증가	조기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비율	평생에 걸친 교육 성취도와 성인 취업
유아 예방 접종률 제고	예방接种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건수	유아 예방 접종률	예방接种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출처: Scott and Boyd(2017), p. 35. Table 2.

2.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다부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 책임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부처 사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유인체계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책무성 확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화하였다. 처음에는 다부처 사업의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기여한 협업부처는 기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유인체계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협업부처가 책임지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협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협업 활동 참여 행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였으나, 협업부처의 불만 폭증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포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택한 책무성 확보 방식은 주무부처나 협업부처의 구분 없이 다부처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성과급이 공동 목표 달성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부처 사업 관리 초기에는 구체적 역할 분담에 대응되는 책무성 확보 체제를 마련하고, 다부처 사업 관리 경험의 축적에 따라 신뢰가 확보된 이후에는 공동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의 사전적 명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하다면, 구체적으로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는 체제의 운영이 효율적이다. 반면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역할 조정이 중요하므로, 공동 책임과 더불어 약한 인센티브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과 함께 개별 국가의 정부 내 신뢰도와 협업 추진 경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유인체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협업 과정의 관리

다부처 사업 관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협업 과정의 관리이다. 협업을 위한 신뢰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과제를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업 기관은 가급적 소수로 국한할 필요가 있

공동 책임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부처 사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유인체계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업 과정의 관리에서
 협업 기관은 가급적 소수로
 국한할 필요가 있으며,
 단일 부처의 자체적 위계
 구조에 대응되는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다. 2~3개 기관이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상의 부처가 참여할 경우, 2~3개의 핵심 협업부처를 선정하고, 그 이외의 부처는 필요에 기반한 협업부처로 지정하여 필요할 때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조직의 위계에 대응되는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단일 부처는 자체적으로 위계 구조를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개별 기관장도 최종적인 협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수립해서, 개별 기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에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기관의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관련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협업 어젠다 개발, 협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해 공동 사무국이 필요하다. 공동 사무국이 공동재원으로 운영될 경우, 개별 기관의 주인의식이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무적인 전문성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협업의 내용은 단일 부처가 시행하도록 한다.

4. 협업 성과의 보고 및 공개

협업 성과의 보고 및 공개도 필요하다. 협업 성과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업 성과는 4색 신호등(초록, 노랑, 주황, 빨강) 체제로 할 수도 있으며,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지나치게 특정 목표치의 달성 여부에 집착하지 않고, 추세를 기반으로 협업의 성과 창출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10개의 다부처 결과 영역에 대한 성과가 6개월 단위로 발표되었으며 미디어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PSA와 미국의 GPRAMA 2010의 경우에는 분기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4색 신호등 활용이 권장된다. 그 이유는, 보통 또는 중간이라는 중립적 판단을 방지하여 보다 명확한 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의 PSA 경험이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4단계 신호등 체제의 활용이기도 하다.

성공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 성공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함으로써 기관이나 개인에게 구체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참여하는 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5. 협업 사업 성과관리 전담 조직 수립

마지막으로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대다수 정부에서 경영기능이 취약함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된 접근법이다. 다부처 사업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조직을 수립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 전담 조직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내 조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제별 협업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고는 중앙 전담 조직의 위치와 관계없이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추진과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 중앙 전담 조직을 설립한다. 중앙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중앙 전담 조직의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필요 인력의 충원과 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전담 조직의 원형인 영국의 전달팀(Delivery Unit)은 공공서비스 협약의 주요 분야별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직 공공서비스 협약의 이행 관리 업무만 전담하였다. 4개의 분야 팀과 1개의 데이터 분석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사업의 컨설팅과 시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팀을 이루었다.

둘째, 중앙 전담 조직이 작동하기 위한 출발점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과 중기적 목표치 궤적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이다. 우선 순위 목표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 의사결정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데이터 기반의 경영(data driven management)’이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분기별 모니터링을 위한 이정표(milestone)에 해당하는 지표와 연간 및 중기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적시성 있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소득계층별, 연령별 등으로 쪼개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쪼개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중앙 전담 조직의 데이터 분석팀이 수행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식별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수립과 운영은
대다수 정부에서
경영기능이 취약함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된
접근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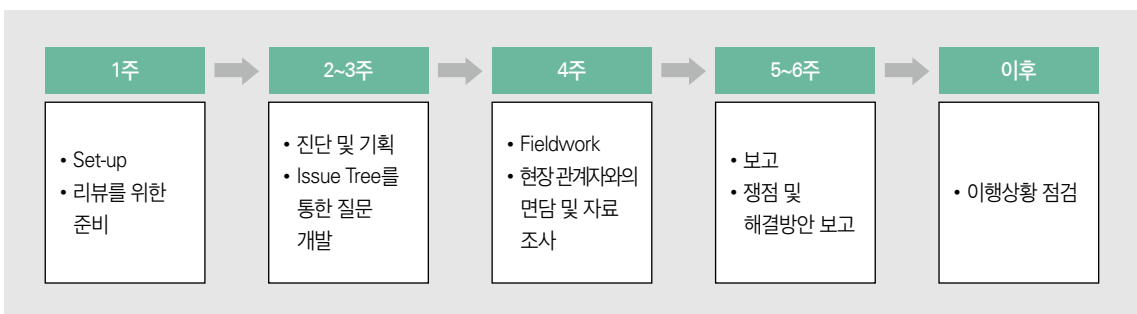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다부처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전담 조직과
사업 부처의 역량과
유인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루틴(routine) 수립이 필요하다. 추진 과정 및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와 업데이트 과정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확인(delivery stocktakes)하며 추진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분석(deep dive)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 목표를 책임진 고위 의사결정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한다.

영국 전달팀의 핵심적인 업무는 공공서비스 협약의 분기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조직과 협의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공공서비스 협약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은 수상 주재 회의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졌으며, 전달팀의장이 직접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긴장감 높은 회의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장으로 내려가는 심층분석(deep dive)과 최고위 의사결정자에게로 연결되는 상승과정(elevation)의 수립과 운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담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정부 내 행정 조직을 벗어나는 지원, 문화의 변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당 조직은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관계관리, 환류와 코칭, 협상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험에서 보면, 핵심사업 평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평가단 형태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한계가 분명했으며, 범정부적 위원회의 경우에도 사무국이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다부처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전담 조직과 사업 부처의 역량과 유인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문제 제기로 마무리한다. 

[그림 4] 심층분석(deep dive) 일정 예시



출처: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김은정·문세영·김한해·이주석·윤수진·신애리·문관식·황은혜, 『부처간 협업조정 기능 강화 및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다부처사업 운영체계 설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 박노옥, 『다부처 연계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Andrew, Matt, Lant Pritchett, and Machael Wolcock, “Doing Problem Driven Work,” *CID Working Paper*, No. 307, Harvard Kennedy School, 2015.
- Fountain, Jane, *Implementing Cross-Agency Collaboration*,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2013.
- Gold, J., *Tracking Delivery: Global Trends and Warning Signs in Delivery Unit*, Institute for Government, London, UK, 2017.
- Mansoor, Zahra, Dana Qarout, Kate Anderson, Celeste Carano, Liah Yecalotele, Veronika Dvorakova and Martin J. Williams., “A Global Mapping of Delivery Approaches,” *DeliverEd Initiative Working Paper*, Education Commission and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2021.
- Nason, Rick, *It's Not Complicated: The Art and Science of Complexity in Business*, Rotman-UTP Publishing, 2017.
- Scott, R. J., and R. Boyd, “The New Zealand Better Public Services Results: A Comparative Analysis Liking Inter-Agency Collaboration with Outcome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2015 Australia and New Zealand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ANZAM, Brisbane, Australia*, 2015.
- _____, *Interagency Performance Targets: A Case Study of New Zealand's Results Programme*,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Washington DC, 2017.

02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이경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kylee0501@kipf.re.kr)

1. 서론

최근 공직 사회의 이직 열풍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일부 정부 부처 소속의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민간기업의 직장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2022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위 ‘철밥통’, ‘노후보장’과 같이 공직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다.

공공기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2,400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퇴사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1년 이내 퇴사한 직장인이 36.7%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1년 이내 퇴사 비율이 31.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케이앤뉴스, 2022. 9. 29).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에서 입사 1년 이내 신입 직원 퇴사율이 두 자릿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0. 10. 26.).

퇴사자 수가 많다는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직접 비용에는 결원에 대한 채용 비용,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1)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 민간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공무원이 높다’ 31.4%, ‘민간이 높다’ 31.9%로 나타났다. 3년 전 2019년 조사에서는 ‘민간이 높다’ 18.4%, ‘공무원이 높다’ 38%였다.

훈련비, 채용 대행 비용, 초과근무 수당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용에는 성장률 저하, 기업의 지식 역량 감소, 경쟁력 저하, 동료 직원의 동요 및 사기 저하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주경·박한준, 2021).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이직이나 퇴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직의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박지성 외, 2023). 이들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관리적 측면이나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지원 수준 등이 이직의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선아 외, 2021). 동시에 이들은 조직 차원의 만족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주로 활용되는 요소들이다(김병준 외, 2017). 이는 곧 이직의도와 조직만족도가 상관성이 높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직몰입’ 항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이직의향’은 꾸준히 증가하였다.²⁾ 따라서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직의향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직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구성원 간 신뢰를 조직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전자가 제도적 측면에서 공식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인지적 측면에서 구성원 간 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구성원 간의 신뢰는 모두 조직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이윤경·이삼열, 2016; 조영대, 2011).

한편, 구성원 간 신뢰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구성원 간 신뢰가 인사관리제도 평가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로도 활용이 되지만, 조직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에 기인한 것이다(남정민 외, 2012; 박성민 외, 2013; 조영대, 2011). 먼저, 일부 연구들에서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남정민 외(2012)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의 제공, 공정한 평가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구성원 간 신뢰는 그 자체로 조직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구성원 간

본고에서는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구성원 간 신뢰를
조직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2)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조직몰입 인식(5점 만점)은 3.38점(2017년)→3.39점(2018년)→3.29점(2019년)→3.30점(2020년)→3.27점(2021년)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이직의향(5점 만점)은 2.82점(2017년)→2.84점(2018년)→2.87점(2019년)→2.90점(2020년)→2.95점(2021년)으로 집계됐다.

조직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노력은
다양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만족도는
이러한 연구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뢰는 조직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조직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nzl, 2008). 만약 본고에서 설정한 구성원 간 신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조직만족도에 대한 인사관리제도 평가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직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해 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본고는 인사관리제도 평가,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증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개별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요인 간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총 7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조직만족도

성과중심의 행정이 강조된 이래로 조직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장혜윤 외, 2016).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조직성과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다(김봉환·이권희, 2018; 박성민 외, 2013; 신만수·김보인, 2017). 조직만족도는 이러한 연구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만족도는 말 그대로 조직이 조직 내 구성원의 개별적인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척도를 의미한다(남유신, 2013; 천정환, 2022). 이에 대해서는 조직 동일시(일체감), 소속감, 애착심 등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다(안상수·김금미, 2010).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천정환, 2022).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을 낮춰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만족도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만족이나 보수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조직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이희태, 2010). 또한 직무몰입도가 높으면 적극적인 근무의욕을 보이고, 이는 본인 이 속한 조직에 대한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김호정, 2012). 한편 최근에는 직무 자율성이나 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공식적 요소는 물론 인지적 측면의 조직 구성원 간 관계, 심리 자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주경·박한준, 2021; 김선아 외, 2021). 이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 및 인사관리 차원에서 보다 많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실제 관련 연구의 범위나 주제가 다양해진 것에 기인한다(박지성 외, 2023). 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인사관리제도 등 공식적 요인과 구성원 간 신뢰 등 비공식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2. 인사관리제도와 조직만족도

인사관리제도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Tompkins(1995)는 정부 인력이 정부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전통적인 인사관리가 연공서열과 위계주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이 공공 부문 종사자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과를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역량 및 능력 개발, 전문성 향상, 내재적 동기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배귀희, 2013; 이윤경·이삼열, 2016; 이창길, 2013).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을 인사관리제도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은 인사관리제도 또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제시되고 있다(김정희·박시남, 2018; 김재기 외, 2013; 박성민 외, 2013; 이윤경·이삼열, 2016). 개별 하위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이다. 공정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적절한 보상은 구성원의 조직만족도를 증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

인사관리제도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수의 연구는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인사관리제도의 하위요소로 제시한다.

사회자본 이론에서 신뢰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기초하면 신뢰는 그 자체로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성과를 평가받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이는 조직만족도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오석홍, 2000).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평가의 공정성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종수, 2012; 이주경·박한준, 2021). 이에 기초하면 평가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구성원의 조직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우수성이다.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학습시키고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사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윤경·이삼열, 2016). 이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행태를 개선하여 조직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이직을 줄여 조직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Appelbaum et al., 2000).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적성 및 기대와 선호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만족도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여진·권경득, 2008).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구성원의 조직만족도 역시 높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3. 인사관리제도 평가,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의 관계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에서 신뢰의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다(Colquitt et al., 2007). 예를 들어 Lewis and Weigert(1985)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신뢰를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속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ukuyama(1995)는 신뢰를 “조직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하였으며, 김상호 외(2008)는 신뢰를 “일하기 좋은 조직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보고 신뢰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면 신뢰는 그 자체로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신뢰는 분석 단위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직 내 계층을 고려한 상사와 부하 간의 수직적 신뢰(Vertical Trust)와 동

료 간에 형성되는 수평적 신뢰(Lateral Trust)로 구분할 수 있다(송정수·이규용, 2009).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구성원 간 신뢰를 ‘동료에 대한 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 ‘부하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성원 간 신뢰는 인사관리제도 평가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이자, 동시에 조직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구성원 간 신뢰’, ‘구성원 간 신뢰와 조직만족도’의 개별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구성원 간 신뢰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구성원 간 신뢰의 관계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과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신뢰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개인의 성과가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은 곧 구성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조직 내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구·장석인, 2014; Higginson and Waxler; 1989). 또한 남정민 외(2012)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중 교육 가능성을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 제도는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 개인의 동기부여나 욕구 충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조직 내 신뢰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인사관리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구성원 간 신뢰와 조직만족도의 관계이다. 조영대(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신뢰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박성민 외(2013) 연구에서도 대인신뢰는 업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직무나 업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곧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구성원 간 신뢰가 조직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면, 구성원 간 신뢰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인사관리제도 평가가 조직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구성원 간 신뢰를 매개하여 결과적으로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사관리제도 평가가 조직만족도에 직접효과를 가지더라도 신뢰의 간접효과를 통해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구성원 간 신뢰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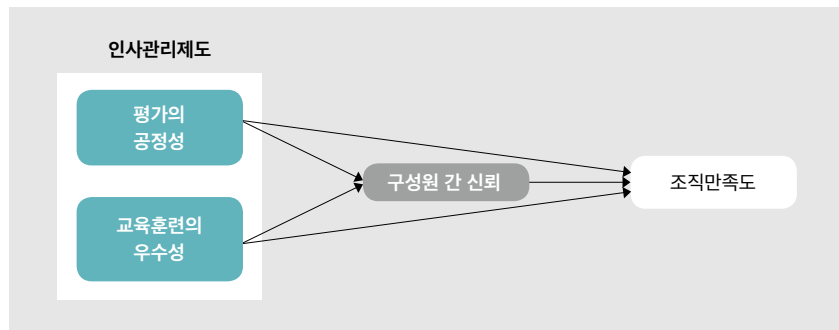
구성원 간 신뢰가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는 인사관리제도 평가,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 증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조직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구성원 간 신뢰를 고려하였다(강여진·권경득, 2008; 이윤경·이삼열, 2016; 이주경·박한준, 2021; Appelbaum et al., 2000). 이들은 각각 제도적 측면의 공식적 요인과 비제도적 측면의 비공식적 요인에 해당한다. 최근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 연구에서는 인사관리제도 등 공식적 요인 외에도 조직 구성원의 인지적, 심리적 측면 등 비공식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박지성 외, 2023). 또한,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관련 연구에서 인사관리제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김정희·박시남, 2018; 김재기 외, 2013; 이윤경·이삼열, 2016). 한편 요인 간 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면, 구성원 간 신뢰는 인사관리제도 평가의 결과변수이자 동시에 조직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남정민 외, 2012; 박성민 외, 2013; 조영대, 2011; Higginson and Waxler, 1989). 이는 곧 구성원 간 신뢰가 인사관리제도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출처: 저자 작성

2. 분석자료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공공기관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2년 9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수집된 표본은 총 705명이며, 모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이다.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자가 550명(78.0%)으로 여자 155명(22.0%)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4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기업 301명(42.7%), 준정부기관 257명(36.5%), 기타공공기관 147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규모 측면에서는 2,000명 이상이 373명(52.9%)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과장·차장급이 367명(52.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2.1%(438명)

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705	100.0
성별	남자	550	78.0
	여자	155	22.0
연령	30대 이하	210	29.8
	40대	294	41.7
	50대 이상	201	28.5
기관 유형	공기업	301	42.7
	준정부기관	257	36.5
	기타공공기관	147	20.9
기관 규모	500명 미만	116	16.5
	500명 이상~1,000명 미만	113	16.0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103	14.6
	2,000명 이상	373	52.9
직급	사원·대리급	174	24.7
	과장·차장급	367	52.1
	부장급 이상(본부장·실장급 포함)	164	23.3
지방이전 여부	없음	267	37.9
	있음	438	62.1
재직기간	5년 미만	77	10.9
	5~10년	127	18.0
	11~15년	143	20.3
	16~20년	139	19.7
	20년 초과	219	31.1

출처: 저자 작성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로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는 재직 중인 기관의 지방이전을 경험하였으며, 재직기간별로는 20년 초과가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주요 변수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로는 리커트 7점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인사관리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평가의 공정성은 ‘업무성과 대비 보수의 적정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원 대비 보수의 적정성’, ‘업무의 난이도 대비 보상의 공정성’, ‘업무의 책임성 대비 보상의 공정성’으로, 교육훈련의 우수성은 ‘직무수행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교육 및 훈련의 노동생산성 기여’, ‘교육 및 훈련의 만족도 및 의욕 증대 기여’, ‘교육 및 훈련 내용의 문제해결 기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구성원 간 신뢰는 ‘부서의 동료, 상사, 부하에 대한 신뢰수준’을 각각 파악하였고(송정수·이규용, 2009), 조직만족도는 기존의 선행연구(안상수·

<표 2> 주요 변수

구분	세부 항목	척도	
인사 관리 제도	평가의 공정성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해 적정하다	리커트 7점 척도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이다	
		나는 담당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나는 담당업무의 책임성 정도를 고려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교육 훈련의 우수성	나는 기관으로부터 나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기관이 나에게 제공한 교육 및 훈련은 나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기관이 나에게 제공한 교육 및 훈련은 나의 만족도 및 의욕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는 교육 및 훈련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업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 간 신뢰	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동료들을 신뢰한다		
	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상사를 신뢰한다		
조직 만족도	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부하들을 신뢰한다		
	나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이 높다		
	내가 속한 조직은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김금미, 2010)에 기초하여 ‘조직에 대한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조직의 유의미’ 등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고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복수의 측정 항목들을 주요 요인들로 축소하고, 이들 간에 내적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탐색적인 차원에서 개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잠재요인에 대한 개별 관측 변수의 신뢰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개별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편,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³⁾과 구조모형 분석이 주로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먼저 회귀분석을 활용할 경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나, 측정오차를 배제할 수 없어 요인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구조모형 분석은 원칙적으로 연속형 변수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범주형 통제변수에 대한 고려는 어려울 수 있으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를 구분하여, 측정오차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배병렬, 2017).

개별 요인 간 관계 검증에는 구조모형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2단계,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형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1단계 모형의 영향력에 비해 작아야 한다.

※ Baron and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단계	회귀모형	조건
1단계	$Y = \beta_{10} + \beta_{11}X$	β_{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2단계	$M = \beta_{20} + \beta_{21}X$	β_{2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3단계	$Y = \beta_{30} + \beta_{31}X + \beta_{32}M$	β_{3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β_{31} 이 β_{11} 보다 작아야 한다.

출처: 이일현(2019)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복수의 항목들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요인들로
 축소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 중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복수의 항목들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요인들로 축소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⁴⁾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노경섭, 2019). 또한 요인의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인회전의 방법에는 직각회전 방식(orthogonal factor rotation)과 사각회전 방식(oblique factor rotation)⁵⁾이 있다(노경섭, 2019). 이 중 직각회전 방식이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뚜렷해질 때까지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베리맥스(Varimax), 쿼티맥스(Quartimax), 이퀴맥스(Equimax) 등이 있는데,⁶⁾ 본고에서는 요인행렬의 열을 기준으로 분산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인 베리맥스 회전기법을 적용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17).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고윳값(eigenvalue)

<표 3>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

구분	항목	요인적재량	비고
인사 관리 제도	평가의 공정성	업무성과 대비 보수의 적정성(fa1_1)	0.912
		유사업무 수행 타 직원 대비 보수의 적정성(fa1_2)	0.922
		업무의 난이도 대비 보상의 공정성(fa1_3)	0.934
		업무의 책임성 대비 보상의 공정성(fa1_4)	0.922
	교육 훈련의 우수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fa2_1)	0.798
		교육 및 훈련의 노동생산성 기여(fa2_2)	0.892
		교육 및 훈련의 만족도 및 의욕 증대 기여(fa2_3)	0.890
	교육 및 훈련 내용의 문제해결 기여(fa2_4)	0.877	
구성원 간 신뢰	부서 동료에 대한 신뢰 정도(me1)	0.825	
	부서 상사에 대한 신뢰 정도(me2)	0.821	
	부서 부하에 대한 신뢰 정도(me3)	0.764	
조직만족도	조직에 대한 소속감(de1)	0.887	
	조직에 대한 애착(de2)	0.874	
	삶에 대한 조직의 유의미(de3)	0.801	

주: KMO(Kaiser Meyer Olkin)=0.906, Bartlett 구형성 검증 유의도=0.000

출처: 저자 작성

4) 공통요인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들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를 정의하는 데 활용된다.
 5) 사각회전 방식은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요인구조가 뚜렷해질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직각회전에 비해 더 뚜렷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사용빈도가 낮다.
 6) 쿼티맥스 회전기법은 요인행렬의 행을 단순화 방식을 의미하며, 이퀴맥스는 베리맥스와 쿼티맥스를 절충한 방식을 의미한다.

을 통해 추출되는 요인의 수를 파악한다. 요인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 관계 정도를, 고윳값은 한 요인의 설명력을 각각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0.5를 상회하고, 고윳값이 1 이상이면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 간에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본고에서는 전체 14개 문항에 대해 외생변수 2개, 매개변수 1개, 내생변수 1개 등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각각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모두 0.6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고윳값 역시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요인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개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이다. 이는 모든 항목 간 상관관계 계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본고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0.7 이상을 충족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개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측정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 0.7 이상을 충족하였다.

2.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량

다음은 각 요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인사관리제도의 하위요소인 평가의 공정성,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요소 중에서는 교육훈련의 우수성이 5.0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성원 간 신뢰는 5.57점으로 개별 요인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만족도는 5.34점으로 인사관리제도보다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으나, 구성원 간 신뢰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평가의 공정성	705	4.01	±1.526	1.00	7.00
2	교육훈련의 우수성	705	5.01	±1.523	1.00	7.00
3	구성원 간 신뢰	705	5.57	±1.264	1.00	7.00
4	조직만족도	705	5.34	±1.236	1.00	7.00

출처: 저자 작성

본고는 절대적합도 지수와
증분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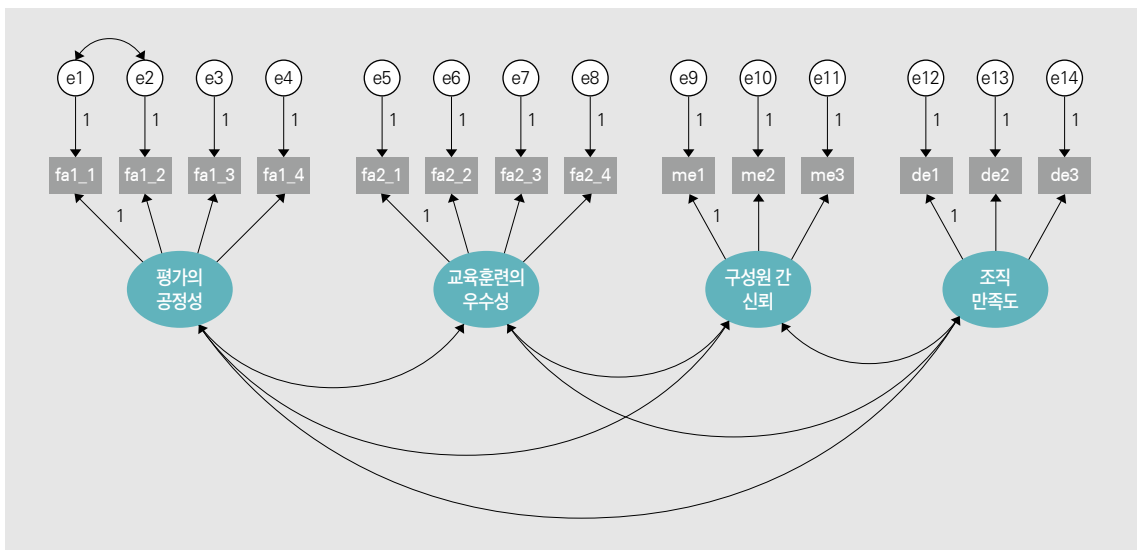
3.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EFA) 및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4개 요인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잠재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신뢰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그림 2] 참조).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자료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본고에서는 절대적합도 지수와 증분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⁷⁾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낮을 경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통해 모형 수정을 진행한다. 수정지수는 특정 고정모수가 자유모수가 되었을 때 모델 χ^2 값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고정모수를 자유모수로 했을 때 χ^2 값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알려준다(배병렬, 2017). 본고에서도 초기 모형에서 일부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아 수정지수가 큰 값을 보이는 일부 측정오차(e1 - e2) 간에 공분산을 허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수정된 모형을 기준으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

7) 절대적합도 지수는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표본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χ^2/df , GFI(goodness-of-fit-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등이 포함된다. 증분적합도 지수는 제안모델이 기초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이 있다(배병렬, 2017).

[그림 2] 확인적 요인 분석



주: fa1_1~fa2_4, me1~me3, de1~de3 등은 관측변수를, '평가의 공정성', '교육훈련의 우수성',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는 잠재요인을, e1~e14는 잠재요인을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각각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표 5> 확인적 요인 분석

구분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p(유의수준)			
fa1_1	←	0.880 0.878 0.973 0.955	-	-	-			
fa1_2	←		0.024	41.447	***			
fa1_3	←		0.025	43.336	***			
fa1_4	←		0.026	41.621	***			
fa2_1	←	0.860 0.963 0.957 0.947	-	-	-			
fa2_2	←		0.030	39.615	***			
fa2_3	←		0.030	38.970	***			
fa2_4	←		0.030	38.018	***			
me1	←	0.913 0.840 0.883	-	-	-			
me2	←		0.039	30.827	***			
me3	←		0.031	33.929	***			
de1	←	0.915 0.930 0.806	-	-	-			
de2	←		0.028	37.921	***			
de3	←		0.030	29.029	***			
적합도	χ^2/df	GFI	AGFI	NFI	RFI	IFI	TLI	CFI
초기	3.461	0.953	0.931	0.978	0.972	0.984	0.980	0.984
수정	2.611	0.965	0.948	0.984	0.979	0.990	0.987	0.990
기준	< 3	≥ 0.9	≥ 0.9	≥ 0.9	≥ 0.9	≥ 0.9	≥ 0.9	≥ 0.9

주: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저자 작성

초기 모형에서 일부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아 모형을 수정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보면 $\chi^2/df=2.611$, $GFI=0.965$, $AGFI=0.948$, $NFI=0.984$, $IFI=0.990$, $TLI=0.987$, $CFI=0.990$ 등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요인에 대한 관측변수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집중타당성을 통해 검증한다. 즉, 구성개념이 되는 잠재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며, 이는 관측변수와 잠재요인 간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회귀계수가 0.7 이상일 경우 관측변수의 신뢰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고에서는 모두 0.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4. 구조모형 분석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교육훈련의 우수성,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 등 요인 간 경로 관계를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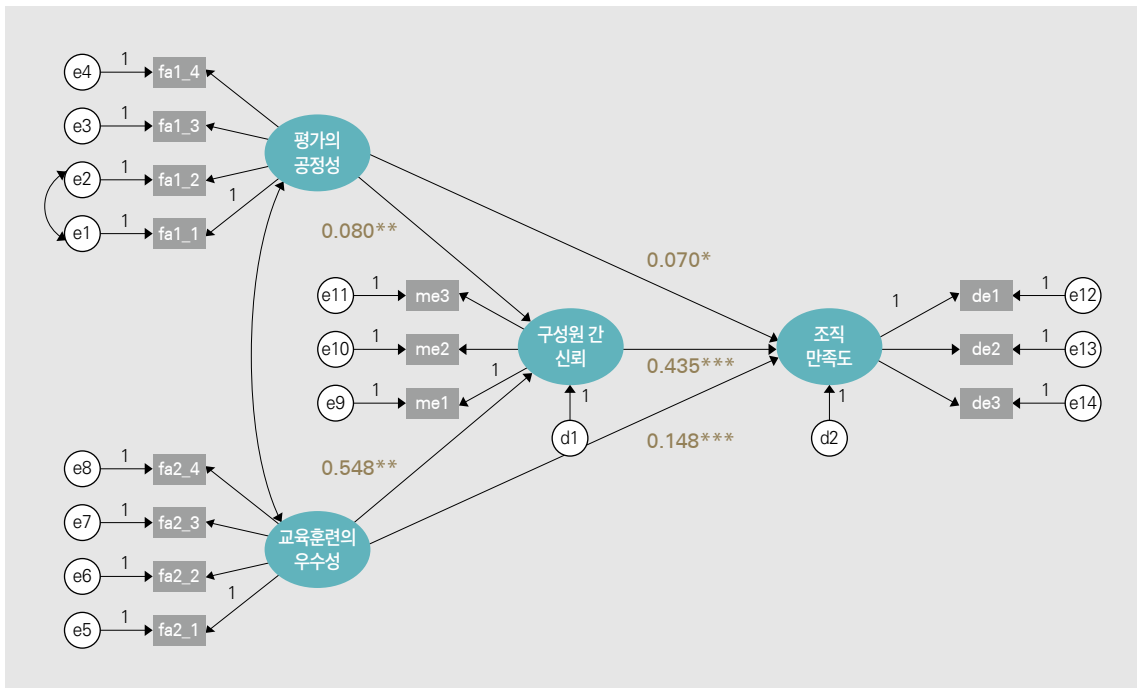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 결과,
조직만족도에 대한
구성원 간 신뢰의
직접효과는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포함한 개별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그림 3] 참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조직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제도의 하위요소인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모두 조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구성원 간 신뢰에 대해서도 인사관리제도의 하위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만족 수준이 증가할수록 구성원 간 신뢰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자체로도 조직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직만족도에 대한 구성원 간 신뢰의 직접효과(0.435)는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포함한 개별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사관리제도가 구성원 간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구성원 간 신뢰가 조직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인사관리제도와 조직만족도 간에 구성원 간 신뢰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구성원 간 신뢰의 매개효과(간접효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

[그림 3] 구조모형 분석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저자 작성

<표 6>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효과 크기	부트스트랩	
				LL 90% CI	UL 90% CI
평가의 공정성 → 신뢰 → 조직만족도	0.105	0.070*	0.035**	0.018	0.058
교육훈련의 우수성 → 신뢰 → 조직만족도	0.386	0.148***	0.238**	0.181	0.300

주: *** p < 0.01, **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저자 작성

간(Confidence Interval, CI)의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Preacher et al., 2007). 분석 결과,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과 조직만족도 간에 구성원 간 신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구성원 간 신뢰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곧 조직만족도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개효과는 크게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만약 종속 변수에 대해 독립변수가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고 있을 경우는 부분매개효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매개변수를 경유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완전매개효과로 각각 구분한다(이일현, 2019). 본고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이 조직만족도에 대해 그 자체로도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고 있어, 구성원 간 신뢰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평가의 공정성(0.070)과 교육훈련의 우수성(0.148)은 그 자체로도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구성원 간 신뢰의 간접효과(0.035, 0.238)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해당 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0.105, 0.386으로 증대된다. 이는 인사관리제도와 조직만족도 간에 구성원 간 신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본고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조직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총 70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구성원 간 신뢰, 조직만족도의 요인 간 경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구성원 간 신뢰의 간접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조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증대하려는 노력과
 구성원 간 신뢰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로관계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인사관리제도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는 조직만족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훈련의 우수성은 구성원 간 신뢰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와 조직만족도 간에 구성원 간 신뢰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사관리제도 평가 → 구성원 간 신뢰 → 조직만족도’의 요인 간 경로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보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공정한 평가 및 적절한 보상 등 인사관리라는 제도적 측면이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이나 조직만족도 등 인지적·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간 관계의 출발점에는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평가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성원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사관리제도가 공식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구성원 간 신뢰는 비공식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물론 공식적 요소인 공정한 평가제도의 구축이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 원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조직만족도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보고에서 구성원 간 신뢰는 평가의 공정성이나 교육훈련의 우수성 등 다른 개별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조직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간접적으로도 조직만족도에 대한 인사관리제도 평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간접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성원 간 신뢰는 조직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신뢰 구축에는 정보의 공유와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박성민 외, 2013). 따라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규 제도 도입 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자료수집 시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연구 목적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 및 규모 등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초한 표본설계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조직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반영하는 데 일부 제한적이었다. 즉, 구성원의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인사관리제도, 구성원 간 신뢰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매우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금 수준이나, 일-가정 양립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 분석(SEM)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요인과 요인 간의 경로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데 이때 연구자의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측정도구와 잠재요인 간의 내적 타당성,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모형에 활용한 자료 간의 적합도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기는 하나, 최종적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자료수집 시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조직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반영에 일부 제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고려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여진·권경득,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 pp. 239~262.
- 김병준·주재복·박해육, 「지방정부 공무원 조직만족도에 관한 연구: 비보상형(non-compensatory)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7, pp. 175~196.
- 김봉환·이권희, 「인사부서의 규모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2018, pp. 135~157.
- 김상호·이진규·최인옥, 「조직후원인식과 상사-구성원 교환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의 조절효과: 군 조직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연구』, 제32집 제3권, 2008, pp. 39~68.
- 김선아·박성만·최성주, 「공공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2호, 2021, pp. 97~130.
- 김정희·박시남,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 몰입 인사관리 매개 변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 연구』, 제14권 제4호, 2018, pp. 31~56.

- 김종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가 조직구성원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1권 제1호, 2012, pp. 63~85.
- 김재기 외, 『한국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13.
- 김호정, 『행정조직과 관료행태』, 탐복스, 2012.
- 남정민·이공희·전병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직수준의 조직신뢰와 개인수준의 성취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인적자원관리』, 제19권 제5호, 2012, pp. 1~26.
- 남유신, 「호텔의 물리적 환경이 종사원의 직무환경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제38권 제4호, 2013, pp. 85~105.
-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2019.
- 박성민·김민영·김민정,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간 적합성이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2호, 2013, pp. 557~593.
- 박지성·양지운·류성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에 게재된 인사관리 분야 논문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 제언: 1980년부터 202년 5월호까지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47권 제1호, 2023, pp. 1~26.
- 배귀희,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태적·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pp. 195~218.
- 배병렬,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2017.
- 송정수·이규용,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자율성, 상사신뢰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 연구』, 제22권 제4호, 2009, pp. 1911~1937.
- 신만수·김보인, 「한국의 사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비교연구」, 『인문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7, pp. 343~373.
- 안상수·김금미, 「성별 관련 조직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여성』, 제15권 제2호, 2010, pp. 285~309.
- 오석홍,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2000, pp. 191~207.
- 이영구·장석인,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인식이 조직신뢰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 청도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2014, pp. 1~27.
- 이윤경·이삼열, 「성과관리제도 및 인적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만족이 정부조직성과 및 조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4호, 2016, pp. 27~63.

- 이일현,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19.
- 이주경·박한준, 「공공기관 종사자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승진과 일가정지원,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제18권 제1호, 2021, pp. 57~81.
- 이창길, 『인적자원행정론』, 법문사, 2013.
- 이학식·임지훈, 『SPSS 24 매뉴얼』, 집현재, 2017.
- 이희태,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동기부여 효과분석: 성과상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제14권 제1호, 2010, pp. 159~180.
- 장혜윤·최정우·박해육, 「지방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방 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2016, pp. 277~298.
- 조영대, 「호텔종사원의 갈등지각수준과 조직신뢰가 직무만족 및 직장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6권 제4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pp. 605~618.
- 천정환, 「국영교정기관과 민영교정기관의 조직만족도 비교연구」, 『교정복지연구』, 제80권, 2022, pp. 81~101.
- Appelbaum, E., T. Bailey, P. Berg, and A. L. Kalleberg, *Manufacturing Advantage: Why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Pay Off*,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 Baron, R. M.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986, pp. 1173~1182.
- Colquitt, J. A., B. A. Scott, and J. A. LePine, "Trust, Trustworthiness, and Trust Propensity: A Meta-Analytic Test of Their Unique Relationships with Risk Taking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4), 2007, pp. 909~927.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1995.
- Higginson, T. J. and R. P. Waxler, "Developing a Trust Culture to Survive in the 1990s," *Industrial Management*, 31, 1989, pp. 27~28.
- Lewis, J. D. and A. Weigert,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1985, pp. 967~985.
- Preacher, K. J., D. D. Rucker, and A. F. Hayes,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2007, pp. 185~227.

Renzl, B., “Trust in Management and Knowledge Sh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and Knowledge Documentation,” *Omega*, 36(2), 2008, pp. 206~220.

Tompkins, Jonatha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Government Hitting the Ground Running*,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5.

『케이앤뉴스』, 「직장인 10명 중 3명 ‘첫 직장, 1년 안에 퇴사’…그 이유는」, 2022. 9. 29., <http://knnws.com/news/view.php?idx=16782>, 검색일자: 2023. 2. 13.

『조선일보』, 「공공기관 신입 퇴사율이 두자릿수? 중기부가 그렇다」, 2020. 10. 26.,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0/10/26/L2C3VMWQLFCTD-CKGCMYZUKYHO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자: 2023. 2. 13.

정책연구

- +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최인혁·김정환
- +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배진수·박정흠·김수현
- +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김현아·조희평
- +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장우현·김우현

0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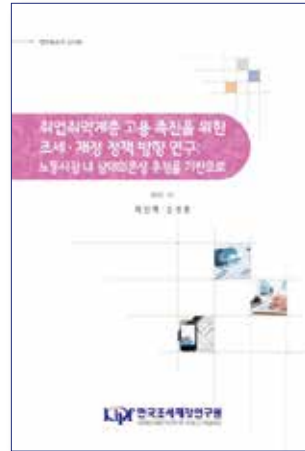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령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3),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언급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학 자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편인데, 가령 취업취약계층의 실업상태 지속의 정도, 실업상태 지속이 상태의존성에 기인하는 정도 등을 비취약계층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외연 확대 및 취약성 증가가 예상 내지 일부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최신 자료에 기반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학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학에 관한 연구가 취업취약계층의 취약성 정도 파악을 넘어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와

도 긴밀히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변화 양상을 엄밀히 추적하고,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신중히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 국내외 문헌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수적 추정 방법(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dynamic random-effects probit model)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봤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이 민감하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 6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영향의 이질성인데, 통상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년(35~49세) 기혼여성 및 청년층(35세 미만)의 경우 흔히 비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35~49세 고졸 초과 남성 내지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비해 분석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상태의존성을 경험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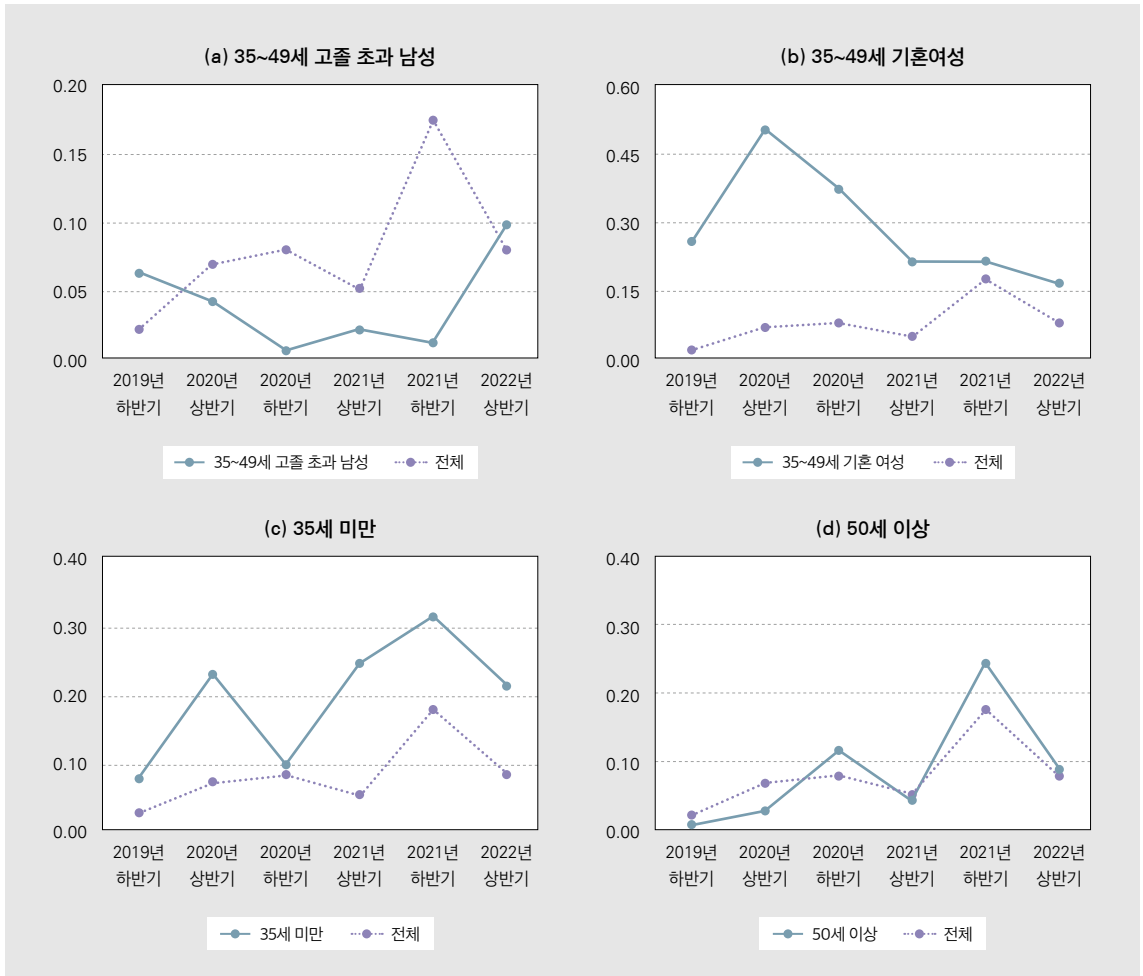
로 추정되었다([그림 1] 참조). 나아가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취약성의 정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취약성이 심화 혹은 회복되는 시점 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기존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모수적 추정 방법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지의 사실이듯 모수적 방법론의 경우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택·도입



B5변형/ 173면
2022. 12.

[그림 1] 실업의 상태의존성 추이: 2019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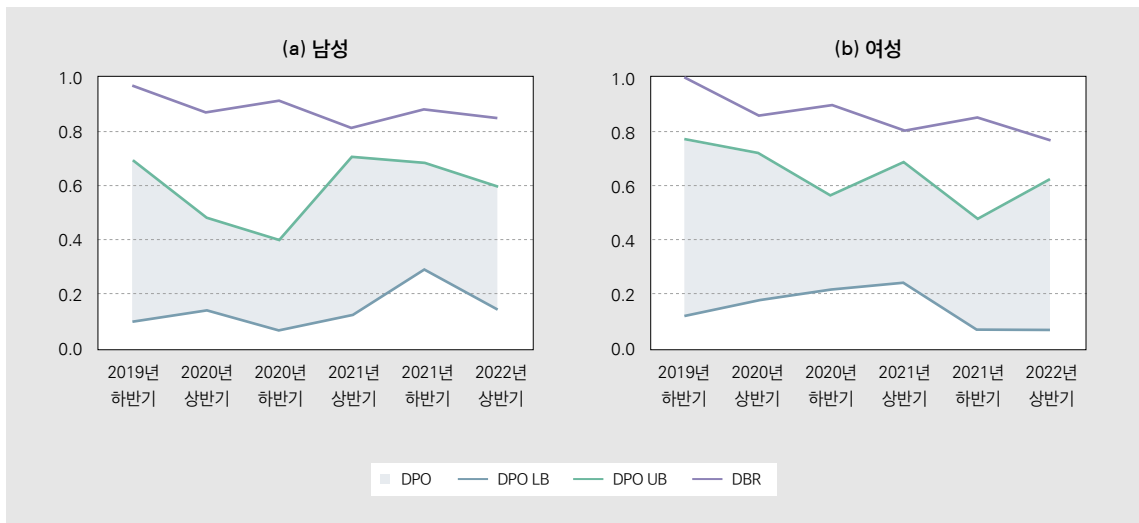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 가정들에 추정 결과가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모수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Torgovitsky (2019)가 제안한 비모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상태의존성을 새롭게 추정하고, 그 결과를 모수적 추정치와 비교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수적 추정치와 비모수적 추정치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모수적 방법 적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러나 자의적으로 도입되었던 가정들이 상태의존성 추정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다만 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업 상태인 사람들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할 경우 그 결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그림 2 참조, 나아가 보다 의미 있는 비모수적 추정 구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모수적 식별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완화를 위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태의존성 발생 내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업취약계층별 고용 촉진 방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실업 상태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이 상태의존성 발생의 주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취업 상태로의 전환을 지원·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구직자의 탐색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완화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 촉진 정책과 관련된 조세·재정 지출의 효율화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다수의 고용 촉진 정책들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바, 정책 대상이나 목표가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실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하며, 각 특례제도 및 재정사업 등의 관성적 일몰 연장 내지 지속 운용은 철저히 경

[그림 2] 모수적·비모수적 방법론의 상태의존성 추정 결과 비교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계해야 한다. 끝으로 취업취약계층 식별 및 추적을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취업취약계층별 이질성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 또 경제·보건 상황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의 취약성이 갑자기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6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2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납세자의 여론이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적 인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형성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황의찬·우석진, 2022). 이는 납세자들의 여론 형성은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과 같이 텍스트의 형태로 나타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뉴스나 댓글과 같은 텍스트 정보를 수량화된 배열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여 텍스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황의찬·우석진(2022)은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부정적인 감성이 강해질수록 정책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넷 여론을 의식하여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며, 세계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ntzkow et al.(2019)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의 범위는 인터넷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의 신설에 관한 여론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개방형 주관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긍·부정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당 정책에 대한 네이버 뉴스 기사, 네이버 뉴스 댓글, 7개 방송사의 유튜브 뉴스의 댓글을 수집하여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집하였다. 이후 다양한 텍스트 방법론을 통하여 설문 텍스트와 인터넷 미디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제Ⅵ장에서는 설문의 텍스트와 인터넷 미디어 텍스트들을 연관규칙학습과 의미망 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그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관규칙학습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은 특정 단어 집합 A가 문장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지지

도와 특정 단어 집합 B가 속한 문장에 다른 단어 집합 A가 포함될 확률인 신뢰도이다. 한편 의미망 분석의 경우 연관규칙학습에서 얻어진 지지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화를 통해서 텍스트의 구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조세정책에 대한 설문 텍스트의 경우 고빈도 단어들의 지지도가 높아 사용되는 어휘가 정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선호에 대한 의견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신뢰도 및 의미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 뉴스 기사의 경우 설문과 같이 고빈도 단어들의 지지도가 높아 사용된 어휘가 정제되어 있었으나,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에 관한 긍·부정의 의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한편 네이버 뉴스 댓글이나 유튜브 뉴스 댓글의 경우, 사용되는 고빈도 단어들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휘가 산발적이고 조세정책과 무관한 정치 관련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는 등 잡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댓글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긍·부정의 견해를 짐작할 만한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어 작성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제 V 장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이용한 토픽모델링과 트랜스포머 모형을 사용한 감성분석을 통해 설문에서 얻어진 텍스트와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LDA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를 유사한 분류로 묶어 주어 해당 텍스트들이 구성하고 있는 주제들의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B5변형/ 184면
2022. 12.

한편 감성분석은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해 긍·부정의 견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설문 텍스트를 트랜스포머 모형으로 학습시켜 감성분류기를 만든 후 인터넷 미디어 텍스트의 조세정책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제들을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들은 분석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에 관한 주제 이외에도 여러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네이버 뉴스 댓글 중 44%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2019년 댓글도 34%는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를 보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2022년의 경우도 30%의 댓글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공매도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27%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설문을 통해서 얻은 텍스트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과 관련하여 긍정으로 응답한 텍스트들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14%), 수익에 대한 과세(20%) 등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원칙들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텍스트들의 경우 투자자 보호(12%)와 과도한 세율(13%), 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수익(20%) 등을 주제로 형성하고 있었다.

감성분석을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 텍스트를 학습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습된 감성분류기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score에서 0.86~0.93 수준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설문에서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에 대한 긍정 비율이 69.3%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이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한다면 유사한 긍정 비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댓글의 경우 약 8%만이 긍정으로 분류되었으며, 90% 이상이 부정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기가 댓글에 대해서 잘못 분류할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긍정 분류는 16% 정도였으며 부정 분류는 80% 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 미디어 여론은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매우 편향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댓글도 긍정 분류가 최대 27%, 부정 분류는 73%가량으로 예측되어 긍정 비율이 네이버 뉴스 댓글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설문 응답에 비해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설문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보았다. 네이버 뉴스 댓글의 경우 댓글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좋아요’나 ‘싫어요’라는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좋아요-싫어요’ 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긍·부정의 분류를 수행하면 긍정 분류가 4%가 되고 부정 분류가 96%가 되어, 가중치가 없는 경우(8% vs 90%)에 비해서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긍정적으로 쓴 댓글보다 부정적으로 쓴 댓글이 훨씬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는 것인데, 인터넷 여론을 작성하는 이들 대부분이 조세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특정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은 텍스트의 주제가 매우 산발적이어서 조세정책에 대한 선호를 잘 대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감성분석 결과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매우 편향되게 표출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왜곡하여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의식하여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며 세계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특정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수행된 기초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의 경우, 2020년 정부발의 세법개정안에서 시행 시기를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으며, 2021년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고, 2022년 정부발의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으로 유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

황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접적인 시사점으로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은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선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 수립과정에 여과 없이 반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좀 더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으로는 조세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세제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미디어 여론의 편향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정치적 양극화 및 여론 양극화의 측정 및 그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도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제에 관한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본 연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발전된 방법론으로 기초연구, 정책연구, 학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7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3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년 출생통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9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의 장기전망 결과에 따르면, 인구추계 중 위기준 실질 GDP 성장률 또한 현재의 2%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 (2021) 분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불안정, 노년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MF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감소추세에 있었음을 보인 바 있고, 성장에 있어서의 노동투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들과 비교 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점, 의무지출 내 복지지출 비중이 절반 정도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볼 때, 복지지출 대응 재정부담이 결과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의무지출을 재정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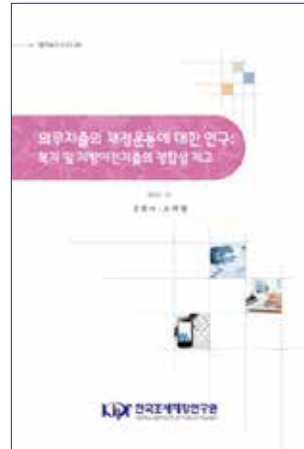
와 구체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대응 스케줄에 따라 사전적으로 추계가 가능함에 따라 통상적인 예산과정과 다른 절차로 관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중심으로 예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출심사 전에 상임위 '조정'단계에서 의무지출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은 통상적인 부처예산은 2년마다 한도를 주고 관리하는 반면, 의무지출은 매년 관리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중 법정 지방이전지출인 지방교부세는 일본의 법정 지방교부세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이어서 일본 사례는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재정총량과 구성비의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과 유사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미 국가채무로 인하여 경직적인 지출이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의무지출의 재정관리 필요성은 큰 의미가 있지 않았다.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노령화 지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방교부세'뿐만 아

나라 교육분야 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법정지출을 개편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조치라는 점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재정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재정개혁 대상은 ‘의무지출 내 법정지출’에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예산편의로 인하여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우선적인 배분지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질적인 두 항목, 즉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 항목이 ‘의무지출’ 내 존재함으로써 두 항목 중 경직성이 높은 지출이 다른 지출 항목을 궁극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정부 등에서 수행하는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 수준’ 가정하에 항목별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므로 ‘의무지출’ 역시 60%대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량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일 뿐, 노령화 속도와 지방이전지출 재정수요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따른 의무지출인 ‘건강보험’ 의료지출이 현재 우리나라 의무지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 안정적인 수준의 의무지출 비중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의무지출 규모는 실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주요국들의 의무지출 구성과 2022년 미국의 IRA 지출 주요 대상이 ‘메디케어’였음을 볼 때, 재정당국과 국회는 향후 ‘의료지출’의 재정부담을 국가가 의무지출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결과적



B5변형/ 177면
2022. 12.

으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적인 재정 규모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의무지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0여 년간 의무지출 내 두 항목,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 규모 변화만으로는 지방이전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압박현상, 즉 ‘구축현상’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국제비교 시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반면, 지방이전지출과 초중등 교육의 국가재정 담당 비중은 최상위권임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두 항목 중 재정 우선순위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지출 내에서의 사회복지지출 재정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은 낮은 반면, 지역 내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것을 보여주었다. 즉,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평균 소득수준은 거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경기도 내에서

의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의 불평등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형평화 효과는 광역 및 시군구에서 강건하게 유지되었고, 반면, 지방이전지출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역 간 자산불평등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직관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지출 재정의 역할 설명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 간 및 지역 내(개인 간, 가구 간) 소득불평등 완화 수단인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 간 상호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해외사례와 선행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지역 간 생산성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무지출 내 사회복지지출 자체의 재정개혁 대안은 항목별 방대한 연구와 가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큰 방향성만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무지출이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위험이 진정한 재정위험 수준을 호도할 가능성은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OECD SOCX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와 의무지출 내에서의 공적연금 분야(사회보험 분야)와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일반재정지출)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현주소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채무의 최종적인 재정부담자인 국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세수연동 법정지출 개편의 필요성, 의무지출 재정공간 확보의 효과성 등을 논의하고 재정당국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개편, 로드맵 구상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재정 위험과 개인·가구 및 지역 간 소득재분배 성과와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법정지출 성격의 의무지출은 분야별 사회복지지출로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이전지출은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이전지출의 재정 규모 및 결정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의무지출 내 사회복지지출과 재량지출의 재정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의 법정지출인 지방이전지출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구조적으로 의무지출 전체 규모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로 구성되는데, 지방이전지출의 결정은 정치적 및 행정 비용을 거의 치르지 않고 결정되는 항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속도가 억제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거시경제적으로는 세수연동방식의 재정지출은 경기의 재정안정화 역할을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이러한 세수연동방식의 지출항목은 결국 재정당국의 증세유인을 저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구구조 대응의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증세’를 포함한 수입원 확대 방안이다. 그러나 이때 국세수입을 통한 재원확보 시 절반을 지방이전지출로 대응하고 남은 절반만을 국민적 재정수요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치르는 세율인상과 과표인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렵다. 넓은 세원을 통한 세수입 확보인프라가 나아지지 않는 한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대안인 세수 규모 확대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

이전지출의 지출준칙 검토 필요성, 법정률 폐지를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하였다. 법정지출 개편 논의는 재정권한과 절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의 의회권한을 의미하는 재정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의무지출 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 삶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보호막이다. 제도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제도 개편에 대하여 국회와 정당국 간 견제와 책임을 목적으로 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법정지출 개편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와 거버넌스를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20여 년이 걸린 사안이다. 극심한 양당제로 진입한 지금의 정치구조하에서 법정지출 개편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우려가 크다. 분명한 건 정부와 의회 간 법정지출 개편 논의 없이 지금 처럼 재량지출과 국가채무만을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즉 일본과 같은 재정운용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이자율 인상과 같은 외부요인만으로 재정을 통한 국민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를 향후 재정운용의 핵심 의제로 주장하고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8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4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긴급위기가 발생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사례조사와 정량적·정성적 정책평가를 수행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론인 제I장과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향후 정책적 대비목적에 적합한 개념으로서의 긴급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긴급위기는 지역 면에서 광역-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기 면에서 연간 이상의 지속력을 갖지만 한 세대 안에 위기를 야기한 원인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로 정의한다.

긴급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분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시적으로 보자면 긴급위기는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문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원인에 따른 긴급위기는 다시 자연재해에 의한 위기, 보건재해에 의한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문적 원인에 의한 위기는 국방외 교충격에 의한 위기와 경제충격에 의한 위기로 세

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른 세부 긴급위기에 대해 개별 대응 지침을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III장에서는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생산 부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미시자료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크게 한국기업데이터 자료(2017~2020)와 BC카드 신용카드 결제 자료(2018~2022)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어떤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기초분석과 심층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피해 확인 및 손실 보상에서 가장 중요시된 지표인 영업이익이, 평시에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

피보았다. 만일 영업이익의 감소가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시기의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를 겪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데이터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소기업 예시로 계산해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2018~2019년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수는 11만 7,824개소, 영업이익 감소 합계분은 37조 500억원에 달하였다. 물론 이에 대비하여 13만 3,126개소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었고, 영업이익 증가분은 37조 2,700억원이 되어 전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00억원가량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해에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은 정상적인 경쟁 과정을 통해 영업이익이 줄고, 나머지는 늘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19~2020년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11만 648개소로 영업이익 감소분의 합계는 41조 400억원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10만 4,406개소가 있으며 이들의 영업이익 증분은 40조 9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감소는 1,400억원에 그친다. 요컨대 개별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감소는 일상적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증가와 감소를 전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자료 분석 결과 먼저 2020년 3월, 2020년 8월, 2020년 12월 등 주요 코로나19 영향시기에 유의한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2021년부터는 대부분 전체 합계 매출 측면에서는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장 모두 이전의 매



B5변형/ 194면
2022. 12.

출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3월에는 소규모, 즉 자영업자들의 경우 2019년 3월 대비 매출액이 4,500억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3월에는 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1조 1,600억원 증가하여,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3월과 2022년 3월을 비교할 경우 매출액이 7,100억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2월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의 경우 2019년 12월 대비 매출액이 9,700억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12월에는 2020년 12월 대비 1조 2,500억원 매출 증가가 확인되어, 2022년 12월의 경우 2019년 12월에 비해 2,800억원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2020년의 특정 달에 한정해서는 유의한 매출 감소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지만 2022년 3월까지의 다른 기간에서는 그다지 큰 경제적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체 매출은 증가하였더라도 개별 업종이나 지역 매출의 경우 특히 특정 시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만, 자영업자라는 하나의 통

칭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꽤 다른 실증 증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업종별 변동은 특히 확진자 수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있었던 2020년 12월의 사례를 고려하여 2020년과 2019년의 12월 업종별 매출 차이를 보면 한식음식점, 주점업 등에서 큰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소비 증가가 상품전문소매업,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으며, 소비가 가능한 영역에서 상당 부분 소비를 대체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제시점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12월은 2018년과 2019년의 12월에 비해 20~09시까지는 다소 소비가 줄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소비 증가가 13~18시에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체 소비를 크게 줄인 것이 아니며 소비의 대체를 이끌어냈다는 가설이 지지될 수 있는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코로나19 긴급위기대응을 위해 실제 어떤 재정정책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재정정책의 집행 총액 및 대략적인 이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피해지원과 법적 손실 보상으로 나누어 정책을 분류하여 특징을 확인하는 한편 재정정책의 기본적인 경제적 가정의 문제점, 설계상의 문제점, 조준의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

의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누락 없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분석하는 재정정책은 2022년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에 역점을 두어 분석하는 이유는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95만 개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당 지급액이 최소 600만원에 달하는, 총액 2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전례를 보기 힘든 규모의 현금 재정지출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적 중요도가 높으나 아직까지 정책 설계와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실보전금은 본 연구가 집필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의 정책이므로 지금까지의 경험이 집대성되어 설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평가를 통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대응하여 살포형 재정정책을 채택할 경우 소중한 재정이 과다하게 사용되면서도 실제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 정책 효과성은 떨어짐은 물론, 만일 지원받아야 하는, 나아가 받아서는 안 되는 부문, 즉 한창 공급부족 초과 수요인 부문에 과다한 지원이 이뤄져 물가 상승 압력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만일 재정지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물가가 과다하게 오른다면, 해당 재정지출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통은 줄이지 못하면서 재정을 낭비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시적으로 초과공급이 이뤄지게 된 부문을 정

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피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손실보전금 평가를 통해, 손실보전금의 가정이 현실 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행히 전반적인 피해 자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응에 아쉬움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비대칭적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진작책은 일시적 초과 수요를 더 자극하게 되고 비대칭적 피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오히려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과도한 손실보상액이 경제에 풀려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살포형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액 자체가 평균 피해 이상으로 제공된 소상공인 정책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과 지역도 존재함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들에게는 증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V장에서는 감염병 감시 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선행연구의 실증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감염병 유행 단계(epidemic phase)를 식별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에 강하게 규제할 수 없었으며, 효과성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신규 중증확진자 시계열 자료를 동일하게 분석해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중증확진 추세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방역 정책의 적절한 강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 일선에서 대응하는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은 비록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화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함을 우려하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반대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 피해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 재원의 한계 및 전달체계의 미비, 사회 각 분야의 활동 위축 장기화로 인한 생산 감소를 우려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 절에서 소개한 실증 모형 등을 통해 방역 측면에서 정확한 위기 단계를 식별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집중적인 방역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오랜 기간 방역 체계를 지속해야 했던 사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본 분석에서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감염병의 불확실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추세의 감소 등 방역 효과가 있음은 앞선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효과를 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중심의

3차 유행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의 순응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 활동 혹은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적 방역 행태를 유지했지만, 장기간의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하며 가족, 친척, 친구와의 만남에서는 이와 같은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Kim et al., 2020).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상태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때에 비해 거리두기의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이 인구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추정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im et al., 2022).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 효과 평가에 단순히 감염의 위험도를 얼마나 경감했는지 검토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의 사회 순응도를 같이 고려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권순만, 2020). 제 V 장에서는 이처럼 장기간 지속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적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의 단계 및 보건의료 대응 체계에 위협이 되는 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역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거리두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제 VI 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 분석 결과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할 때 추가로 확인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 보고 향후 재정정책 개선에 있어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초기대응의 문제점, 긴급 물자 조달과 배급의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짚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향후 긴급위기 대응에 대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음의

10개 교훈으로 정리하였다. 

- 교훈 1: 평시에 위기를 대비하라.
- 교훈 2: 위기 발생 시 위기의 실체가 불확실한 초기에는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로 임하라.
- 교훈 3: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는 항상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
- 교훈 4: 위기의 최종 해결을 위한 계획과 노력은 위기 시작부터 시작하라.
- 교훈 5: 위기 시의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려면, 평시의 경제를 바르게 이해하라.
- 교훈 6: 명확한 증거 없는 예단에 따른 재정 대응을 자제하라.
- 교훈 7: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위기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라.
- 교훈 8: 경제 주체들은 큰 충격에도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함을 기억하라.
- 교훈 9: 피해보상이나 손실보전 정책 집행 시에는 사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
- 교훈 10: 과세자료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프라 자료로 보완하라.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9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친환경 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3월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발표함^{1), 2), 3)}

- 신규 구매한 친환경 차(new clean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으로 2023년 4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등재 후 4월 18일부터 적용됨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차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되어야 함
 - 2023년은 40% 이상이고, 매년 증가하여

2026년 이후 80%에 도달할 예정임

- 미국 등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되어야 함

-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토로 명시함
- 차량식별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나 차량에 부착된 라벨(information label)로 최종 조립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⁴⁾

■ 요건을 갖춘 친환경 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고소득 납세자는 제외됨^{5), 6)}

- 핵심 광물(가공)과 배터리 부품(최종조립) 요건을 모두 갖춘 친환경 차를 구매한 경우 7,500달러,⁷⁾ 하나의 요건만 갖춘 친환경 차를 구매한 경우 3,750달러⁸⁾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의 소득세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환급 및 이월이 불가함

- 조정 후 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

1) FEDERAL REGISTER, "Section 30D New Clean Vehicle Credit," 2023. 4. 1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17/2023-06822/section-30d-new-clean-vehicle-credit>, 검색일자: 2023. 4. 17.

2) IRS, "IRS issues guidance and upda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lated to the new clean vehicle critical mineral and battery components," 2023. 3. 31.,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and-updates-frequently-asked-questions-related-to-the-new-clean-vehicle-critical-mineral-and-battery-components>, 검색일자: 2023. 4. 24.

3) IBFD, "US Treasury Department and IRS Propose Regulations on Critical Minerals and Battery Components Requirement of the New Clean Vehicle Tax Credit," 2023. 4.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4_us_5.html, 검색일자: 2023. 4. 17.

4) www.FuelEconomy.gov에서 확인 가능; IRS, "IRS upda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lated to new, previously owned and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s," 2023. 4., <https://www.irs.gov/pub/taxpros/fs-2023-08.pdf>, 검색일자: 2023. 4. 20.

5) IRS, "Credits for New Clean Vehicles Purchased in 2023 or After," 2023. 4. 17.,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clean-vehicles-purchased-in-2023-or-after>, 검색일자: 2023. 4. 20.

6)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26 USC 30D: Clean vehicle credit,"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26+USC+30D&f=true&sort&fq=true&num=11&hl=true&edition=prelim&granuleId=USC-prelim-title26-section30D>, 검색일자: 2023. 4. 20.

7)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27만 5,000원임

8)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6만 8,750원임

AGI)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AGI가 배우자 합산신고의 경우 30만달러,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22만 5,000달러,¹⁰⁾ 이외 15만달러¹¹⁾ 이상의 납세자는 동세제혜택에서 제외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캐나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년 3월 28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을 발표함¹²⁾
- 부자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개인 및 법인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13), 14), 15)}

- 고소득자의 최저한세율(AMT rate)을 15%에서 20.5%로 인상함
- 주식양도차익면제(Capital Gain Exemption)¹⁶⁾ 조건을 강화함
- 저소득층에게 상품용역세(GST)를 환급하는 방식(Grocery Rebate)으로 식료품비를 보조함
 - 성인 1인당 최대 153캐나다달러, 어린이 1인당 최대 81캐나다달러임
- 종업원주식신탁제도(Employee Ownership Trust, EOT)를 개정함
 - EOT 관련 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하여 준비금(capital gain reverse)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EOT 관련 미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하여 21년마다 실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치과치료정책(Canadian Dental Care Plan)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캐나다 정부와 공유함

9)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756만원임

10)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817만원임

11) 2023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878만원임

12)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releases Budget 2023,"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government-of-canada-releases-budget-2023.html>, 검색일자: 2023. 4. 17.

13)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making-life-more-affordable.html>, 검색일자: 2023. 4. 25.

14) GOVERNMENT OF CANADA, "Stronger Public Health Care,"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stronger-public-health-care.html>, 검색일자: 2023. 4. 25.

15) IBFD, "Canada's Budget 2023: Personal Tax Measures Increase Alternative Minimum Taxes on High Earners, Restrict Benefits for Intergenerational Share Transfers,"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31_ca_2.html, 검색일자: 2023. 4. 17.

16)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부모 소유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을 자녀의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세대 간 사업 이전) 주식의 양도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임(IBFD, "Rare Private Member Bill Passes Both Houses of Parliament and Receives Royal Assent, Facilitat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and Shares of Family Farm and Fishing Corporations," 2021. 7.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12_ca_1%23tns_2021-07-12_ca_1, 검색일자: 2023. 4. 2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청정에너지 및 기술 부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17), 18)}

- (청정전기투자 세액공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유틸리티, 원주민 공동체 등이 에너지 저장시스템, 송전 장비 등에 투자한 자본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함
- (청정기술제조투자 세액공제) 청정 기술을 제조하고 중요 광물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투자 비용에 대해 30% 세액공제함
- (청정수소투자 세액공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15~40% 세액공제함
- (법인세율 인하) 무공해 청정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연장함

■ 국제조세 부문에서는 필라 1, 필라 2의 이행을 중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¹⁹⁾

- (필라 1)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의 수정된 입법 초안을 발표할 계획임
- 2021년 12월 발표한 입법 초안에 따르면

OECD 협정에 따른 다자간 협약²⁰⁾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DST를 부과할 수 있음²¹⁾

- (필라 2)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을 도입하고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을 시행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영국

[탄소국경 조정제도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영국은 2023년 3월 30일, 탄소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22), 23)}

- CBAM 적용 대상 산업의 기업 및 관련 제품 수입업체뿐 아니라 학계, 비정부조직 등으로

17) GOVERNMENT OF CANADA, "A Made-in-Canada Plan: Affordable Energy, Good Jobs, and a Growing Clean Economy," 2023. 3. 2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a-made-in-canada-plan-affordable-energy-good-jobs-and-a-growing-clean-economy.html>, 검색일자: 2023. 4. 25.

18) IBFD, "Canada's Budget 2023: Business Tax Measures Support Green Economy,"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3-31_ca_1%23tns_2023-03-31_ca_1, 검색일자: 2023. 4. 17.

19) IBFD, "Canada's Budget 2023: International Tax Measures Advance Adoption of Pillar One, Pillar Two," 2023. 3.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3-31_ca_4%23tns_2023-03-31_ca_4, 검색일자: 2023. 4. 17.

20) 2021년 10월 필라 1 관련 합의에서 2022년에 신속하게 다자협약을 수립하고, 2022년 중반까지 서명 절차를 거친 후 각 국가가 다자협약의 비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일정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부터 다자협약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함; OECD,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1., <https://www.oecd.org/tax/beps/brochure-two-pillar-solution-to-address-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october-2021.pdf>, 검색일자: 2023. 5. 4.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캐나다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법안 추진」, 2022. 1. 14.,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3. 4. 25.

22)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Consults 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3. 4.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3_uk_1.html, 검색일자: 2023. 4. 17.

23) GOV.UK., "Addressing carbon leakage risk to support decarbonisation,"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ddressing-carbon-leakage-risk-to-support-decarbonisation>, 검색일자: 2023. 4. 17.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금번 의견수렴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CBAM은 영국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형식으로 부과하게 됨²⁴⁾

- 영국 정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CBAM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자 함
 - 영국 정부에 따르면 CBA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분야로는 시멘트, 화학제품, 유리, 철강, 비철금속(nonferrous metals), 종이 및 펄프, 정제(refining), 비료(fertilizer), 발전(power generation)이 있음
 - 또한 현행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이 아닌 농업 또는 목재와 같은 분야가 포함될 경우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영국 정부는 CBAM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은 2026년 CBAM의 초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산업용 탄소 배출의 3분의 2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90%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EU는 지난 2022년 12월,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임²⁵⁾

- EU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 10월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아일랜드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에 대한 부가세 0%로 인하]

- 아일랜드 정부는 2023년 4월 5일, 주거용 태양광 패널의 공급 및 설치(solar panels for private dwellings)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에서 0%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함^{26), 27)}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9,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900만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24) Sarah Paez, "U.K. Government Consults on Introducing a CBAM," Tax Notes International, Vol. 110, 2023. 4. 3., p. 114.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3-01호)」, 2023, p. 20.

26) IBFD, "Ireland - Ireland Announces 0% VAT for Supply,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from 1 May 2023," 2023.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1_ie_1.html, 검색일자: 2023. 4. 17.

27) Government of Ireland, "Ministers McGrath and Ryan announce a zero rate of VAT for the supply and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for private dwellings from 1 May 2023," 2023. 4.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977ed-ministers-mcgrath-ryan-announce-a-zero-rate-of-vat-for-the-supply-and-installation-of-solar-panels-for-private-dwellings-from-may-1st-2023/>, 검색일자: 2023. 4. 1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동 조치는 202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며, 영구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관련 에너지 패키지 의회 제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4월 5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및 에

너지 세액공제 등의 개정을 포함한 조치를 담은 에너지 패키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⁸⁾

- 개인소득세 세율에 따른 소득 구간은 2024년 변동됨
- 에너지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O2)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I)와 2024년부터 함께 적용되도록 하고, 두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액 산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함²⁹⁾
- 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됨
- 법안은 경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Con-

<표 1>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변동(2023~2024)

(단위: %, 유로)

세율	2023년	2024년	세율	2023년	2024년
0	~11,265 이하	~11,982 이하	26	32,289 초과~34,233 이하	34,347 초과~36,417 이하
8	11,265 초과~13,137 이하	11,982 초과~13,971 이하	28	34,233 초과~36,177 이하	36,417 초과~38,487 이하
9	13,137 초과~15,009 이하	13,971 초과~15,960 이하	30	36,177 초과~38,121 이하	38,487 초과~40,557 이하
10	15,009 초과~16,881 이하	15,960 초과~17,949 이하	32	38,121 초과~40,065 이하	40,557 초과~42,627 이하
11	16,881 초과~18,753 이하	17,949 초과~19,938 이하	34	40,065 초과~42,009 이하	42,627 초과~44,697 이하
12	18,754 초과~20,625 이하	19,938 초과~21,927 이하	36	42,009 초과~43,953 이하	44,697 초과~46,767 이하
14	20,625 초과~22,569 이하	21,927 초과~23,997 이하	38	43,953 초과~45,897 이하	46,767 초과~48,837 이하
16	22,569 초과~24,513 이하	23,997 초과~26,067 이하	39	54,897 초과~100,002 이하	48,837 초과~106,383 이하
18	24,514 초과~26,457 이하	26,067 초과~28,137 이하	40	100,002 초과~150,000 이하	106,383 초과~159,564 이하
20	26,457 초과~28,401 이하	28,137 초과~30,207 이하	41	150,000 초과~200,004 이하	159,564 초과~212,745 이하
22	28,401 초과~30,345 이하	30,207 초과~32,277 이하	42	200,004 초과	212,745 초과
24	30,345 초과~32,289 이하	32,277 초과~34,347 이하			

주: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출처: Guide des Impôts, "Guide des Impôts 2023," https://www.guidedesimpots.lu/wp-content/uploads/2023/02/GDI_2023.pdf, 검색일자: 2023. 4. 25.;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28)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5. 4. 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IBFD, "Energy Package Presented to Parliament, Including New Personal Income Tax Table and Modified Energy Credit," 2023. 3.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6_lu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29)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L.I.R.)," <https://impotsdirect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IR/LIR2023.pdf>, 검색일자: 2023. 4. 13.

<표 2>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및 에너지 세액공제 산출 방식 변동

(단위: 유로)

세액공제 산출(기준)			세액공제 및 에너지 세액공제 산출(개정)			
분류	소득기준	공제액	분류	소득기준	공제액	
연금수령자 ¹⁾	300 이상~ 935 이하	396	연금 수령자	936 ²⁾ 이상~ 40,000 이하	144	
	근로자 · 개인 사업자	936 이상~ 11,265 이하				396 + (순소득 - 936) ×0.029
		11,266 이상~ 40,000 이하	696	개인 사업자	40,001 이상~ 79,999 이하	144 - (순소득 - 40,000) ×0.0036
		40,001 이상~ 79,999 이하	696 - (순소득 - 40,000) ×0.0174			

주: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1) 세액공제 산출(기준) 방식에서 연금수령자의 소득이 300~935유로 구간인 경우 공제액이 396유로인 것을 제외하고, 연금수령자의 산출 방식은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산출 방식과 동일함

2) 연금수령자의 산출 방식은 소득 기준이 최소 300유로 이상인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산출 방식과 동일함

출처: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 <https://impotsdirectes.public.lu/dam-assets/fr/legislation/LIR/LIR2023.pdf>, 검색일자: 2023. 4. 23.

<표 3> 룩셈부르크 개인소득세 경제 세액공제

(단위: 유로)

개인사업자		근로자·연금수령자	
소득기준	공제액	소득기준	공제액
13,500 초과~ 15,000 ²⁾ 이하	(순이익 - 13,500)×4/125	1,125 초과~ 1,250 이하	(월소득 - 1,125)×(4/125)
15,000 초과~ 25,200 이하	(순이익 - 15,000)×3/850 + 48	1,250 초과~ 2,100 이하	(월소득 - 1,250)×(3/850) + 4
25,200 초과~ 55,200 이하	(순이익 - 25,200)×37/2,500 + 84	2,100 초과~ 4,600 이하	(월소득 - 2,100)×(37/2,500) + 7
55,200 초과~ 114,000 이하	528	4,600 초과~ 9,500 이하	44
114,000 초과~ 119,100 이하	(순이익 - 114,000)×4/425 + 528	9,500 초과~ 9,925 이하	(월소득 - 9,500)×(4/425) + 44
119,100 초과~ 170,100 이하	576	9,925 초과~ 14,175 이하	48
170,100 초과~ 179,000 이하	(순이익 - 170,100)×3/356 + 576	14,175 초과~ 14,916 이하	(월소득 - 14,175)×(3/356) + 48
179,000 초과	651	14,916 초과	54.25

주: 2023년 4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467원임

출처: Guide des Impôts, "Guide des Impôts 2023," https://www.guidedesimpots.lu/wp-content/uploads/2023/02/GDI_2023.pdf, 검색일자: 2023. 4. 25.; Chambre des Députés, "N°8195 Entrée le 05.04.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8/095/276958.pdf>, 검색일자: 2023. 4. 13.

joncture, CI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임
- 경제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독일

[미래금융법(자본시장 강화자금조달 법안) 초안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3년 4월 3일, 미래 확보를 위한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 법안(미래금융법,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을 발표함^{30, 31)}

- 연방내각은 2022년 7월 27일, 연방정부의 ‘스타트업 전략(Start-up Strategie)’을 채택하며

린드너(Lindner) 연방재무장관이 미래 금융법(ZuFinG)의 도입과 주요 요점을 발표하였음³²⁾

- 2023년 4월 3일 법안 초안을 발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함³³⁾
- 발표된 초안의 세제 측면 주요 내용은 종업원 주식 면세혜택 확대 및 대체투자펀드(AIF) 운용의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가 있음³⁴⁾
 - (소득세법 개정) 종업원 주식 소유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1,440유로³⁵⁾에서 5,000유로³⁶⁾로 인상함
 - 500명 미만 종업원 및 연간 매출액 1억유로 이하인 기업에 주식 과세이연을 연장하여 해당 조항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투자법 개정) 기존의 유럽연합 공모 펀드 기준(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에 준하는 대체투자펀드에만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³⁷⁾

30) 독일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ntwurf eines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 – ZuFinG),” 2023. 4.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VII/20_Legislaturperiode/2023-04-12-ZuFinG/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31) 독일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Zukunft finanzieren,” 2023. 4.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Start-ups/zukunf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32) 독일연방재무부(Bundefinanzministerium), “Start-up Fahrplan steht: Kabinett beschließt erste umfassende Start-up-Strategie,” 2022. 7.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7/2022-07-27-start-up-fahrplan-steht.html>, 검색일자: 2023. 4. 25.

33) 독일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 – ZuFinG),” 2023. 4. 12., <https://www.bmj.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Zukunf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19.

34) 독일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Finanzierung von zukunftssichernden Investitionen(Zukunftsfinanzierungsgesetz-ZuFinG)(「미래금융법」 초안),” 2023. 4. 12.

35) 2023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2만 5,987원임

36) 2023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3만 7,450원임

37) 「부가가치세법(UstG)」(Umsatzsteuergesetz(UStG) § 4 Steuerbefreiungen bei Liefer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의 범위를 확대하여 독일 「투자법(Kapitalanlagegesetzbuch)」 내 모든 대체투자펀드의 운용으로 면세 혜택을 확장할 계획임³⁸⁾

- 세계 측면을 제외한 해당 법안의 기타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기업공개(IPO) 규제요건 변경, 성장기업·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기명주식 도입 등이 있음
- 기업공개(IPO) 최소 자본금을 125만유로³⁹⁾에서 100만유로⁴⁰⁾로 낮춤
- 성장기업 및 스타트업은 복수의결권(Mehrstimmrechten) 주식을 허용하여 소수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이 보완될 예정임
- 전자증권을 통한 주식 발행과 가상자산(Kryptowerten)의 이동성을 검토함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사가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해 5%의 배당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함⁴¹⁾

- 그리스 국회는 그리스 국적 어선, 예인선 및 자채 준설선⁴²⁾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음
- 그리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특정 해운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5%의 배당세 부과를 입법 제안한 바 있음⁴³⁾
- 그리스는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통해 그리스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리스 국적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외국 해운중개회사의 배당금에 부과하는 배당세와 균등하게 처리할 목적임

■ 제정된 법안에 따라 그리스 국적 해운회사의 주주 및 파트너에 대해서는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5%의 배당세를 부과함

- 배당세의 과세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분배되는 배당금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그리스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5%의 배당세 부과를 의결]

■ 그리스 국회는 2023년 3월 28일, 그리스 해운회

38) 타 EU 회원국(룩셈부르크 등)들이 모든 대체투자펀드(AIF)의 운용을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래금융법의 도입으로 독일 법률을 다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39) 2023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억 3,743만원임

40) 2023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6,973만원임

41) 그리스 국회, “Πλαίσιο ρύθμισης οφειλών και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και τελωνειακές ρυθμίσεις, προσαπία των συντάξεων από τον πληθωρισμό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για τη στήριξη της κοινωνίας και της επιχειρηματικότητας,” 2023. 3. 28., https://www.hellenicparliament.gr/Nomothetiko-Ergo/Anazitisi-Nomothetikou-Ergou?law_id=7a192179-1a90-4288-abbb-afc70003b16b, 검색일자: 2023. 4. 17.

42) 준설선을 해상 운송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 시간이 준설선 총사용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3) 그리스 국회, “Πλαίσιο ρύθμισης οφειλών και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και τελωνειακές ρυθμίσεις, προσαπία των συντάξεων από τον πληθωρισμό και άλλες διατάξεις για τη στήριξη της κοινωνίας και της επιχειρηματικότητας,” 2023. 3. 15.,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2249487.pdf>, 검색일자: 2023. 4. 17.



포르투갈

[생활비 상승 억제를 위해 필수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발표]

- 포르투갈 정부는 2023년 3월 24일, 포르투갈인의 생활비 상승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 필수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폐지를 발표함⁴⁴⁾
 - 포르투갈인의 생활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조치로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필수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계획임
 - 필수식품 목록은 44개로 지정되어 있고 빵, 감자, 파스타, 쌀, 우유, 치즈, 달걀, 여러 과일 및 채소, 올리브 오일, 버터, 식용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생선 등이 포함됨
-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와 협력을 맺었으며, 해당 조치는 2023년 4월 중순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네덜란드

[PSP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이행 법안 채택]

- 네덜란드 상원은 2023년 4월 4일, EU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 PSP)에 대한 새로운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⁴⁵⁾
 - EU의 지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PSP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관련 법안(New rules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이 시행될 예정임
- 위 법안은 COUNCIL DIRECTIVE(EU) 2020/284의 PSP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VAT 사기 방지 목적으로 2020년 2월 18일, EU 내에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새로운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⁴⁶⁾
 - PSP는 지침에서 정의한 의무 범위에 속하는 국경 간 지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 PSP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래

44) 포르투갈 정부, “Apresentadas novas medidas para mitigar o aumento do custo de vida dos portugueses,” 2023. 3. 24., <https://www.portugal.gov.pt/pt/gc23/comunicacao/noticia?i=apresentadas-novas-medidas-para-mitigar-o-aumento-do-custo-de-vida-dos-portugueses>, 검색일자: 2023. 4. 17.

45) IBFD, “Upper House Adopts Bill to Implement Directive on VAT Data Reporting Obligation for Payment Service Providers,” 2023. 4.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5_nl_1.html, 검색일자: 2023. 4. 14.

46) EY, “EU introduces new VAT reporting obligations as of 1 January 2024,” https://www.ey.com/en_lu/tax/eu-introduces-new-vat-reporting-obligations-as-of-1-january-2024, 검색일자: 2023. 4. 14.

상대방에 대하여 분기별 25개 이상의 국경 간 지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록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⁴⁷⁾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2023년 화석·연료 부문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 제안]

■ 덴마크 정부는 2023년 3월 22일, 원유·천연가스·석탄 및 정유 부문 기업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연대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표함⁴⁸⁾

-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 조치(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에 따라, 초과이익세의 성격을 가지는 연대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표함

■ (과세 대상, 시기 및 산업) 2023년 과세연도 매출액 중 75% 이상이 원유 정제 및 추출·채광 또는

코크스 오븐가스 제품 생산 등의 매출액으로 구성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⁴⁹⁾

- 법적 확실성 원칙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2023년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적용됨

■ (과세표준 및 세율) 2018~2021년 4개년 평균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초과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33%의 세율이 적용됨

-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에 설정된 최소 비율에 따라 33%의 요율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판매 부가가치세 인하]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4륜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 및 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도입함⁵⁰⁾

- 해당 인센티브는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서

47) EY, "EU introduces new VAT reporting obligations as of 1 January 2024," https://www.ey.com/en_lu/tax/eu-introduces-new-vat-reporting-obligations-as-of-1-january-2024, 검색일자: 2023. 4. 14.

48) IBFD, "Denmark Proposes Solidarity Contribution for Fossil Fuel Sector to Apply Only in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7_dk_1.html, 검색일자: 2023. 4. 18.

49) 덴마크 의회, "L 69 Forslag til lov om et midlertidigt solidaritetsbidrag," <https://www.ft.dk/samling/2022/lovforslag/l69/index.htm>, 검색일자: 2023. 4. 18.

50) IBFD, "Indonesia Reduces VAT on Sale of Electric Vehicles," 2023. 4.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04_id_1.html, 검색일자: 2023. 4. 1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배터리 기반 전기 모터 자동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배터리 구동 전기 모터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통해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40% 이상인 4륜 배터리 구동 전기 모터 자동차 및 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1%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10%는 정부에서 부담함

■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20~40%인 배터리 구동 전기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6%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나머지 5%의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부담함

■ 해당 인센티브와 관련된 2023년 재무부 규정 제 38호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중국

[토지사용세 감면 및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공제 확대 발표]

■ 중국 정부는 물류기업의 지정 상품 보관 장소에

대한 도시 토지사용세 50% 감면 예정을 발표함⁵¹⁾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물류기업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토지에 대한 보관시설 관련 도시 토지사용세가 50% 감면될 예정임

- 물류기업은 창고 보관 및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고 등록된 기업으로 정의됨

● 감면 기준이 되는 보관 상품에는 곡물, 면화, 기름, 설탕, 과일, 육류, 해산물, 비료, 석탄, 원유, 철 또는 비철 금속, 플라스틱,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되며 사용되는 토지가 감면 대상이 되려면 시설면적이 6,000㎡를 넘어야 함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함⁵²⁾

●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R&D) 활동이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100%를 공제하는 것으로 기존의 75%에서 확대 적용할 것을 발표함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대규모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발표일로부터 2023년 공제분에 소급하여 적용되고 별도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정리: 정효림 세무사>

51) IBFD, "China Halves Urban Land Use Tax for Storage of Designated Commodities," 2023. 4.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4-11_cn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52) IBFD, "China Extends Super-Deduc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2023. 3.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3-29_cn_1.html, 검색일자: 2023. 4. 13.



호주

[과소자본 규정 관련 법안 업데이트]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3월 16일, OECD의 모범 사례 지침에 따라 과소자본 규칙(thin capitalization rules)을 변경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53), 54)}
 - 부채 공제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국내 과세표준에 대한 위험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10월 발표한 2022/23 예산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함
- 신규 과소자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자본에 대한 이자 공제액을 제한하고 이자 비용의 평가 방식 및 허용 범위 등을 변경함
 - 납세자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세이프 하버 조항의 이자 공제를 EBITDA(이자·과세·상각 전 수입)의 30%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세이프 하버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이 영구적으로 소멸되나, 변경된 규정하에서는 최대 15년간 이월이 허용됨
 - 공제 비용을 기존 주주 및 채권의 자금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gearing test)⁵⁵⁾에서 전체 수익

- 대비 이자 비용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체함
- 또한 관련 기업 및 당사자의 부채에 대한 이자 공제까지 허용하던 기존과 달리, 변경안에서는 호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된 제3자의 정상 가격 부채에 대한 이자 공제만을 허용함
- 기존과 달리 국외의 비포트폴리오 투자의 면제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공제 대상의 정의 및 이와 관련한 요구 조건 등에도 변경 사항이 존재함
 - 공인예금수취기관(ADI)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과소자본 규칙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납세자는 부채액이 정상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부채 공제의 정의를 확장하여 경제적으로 이자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금액들을 포함시킴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무형자산 지급액 비공제 관련 공개 초안 발표]

- 호주 재무부는 2023년 3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저세를 국가의 무형자산 관련 지급액에

53)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Multinational Tax Integrity – strengthening Australia’s interest limitation(thin capitalisation rules),”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3-370776>, 검색일자: 2023. 4. 18.

54) IBFD, “Australia - Australia Releases Draft Legislation to Update Thin Capitalization Rules,” 2023. 3.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3-21_au_2, 검색일자: 2023. 4. 18.

55) 회사 자본을 주주 및 채권 자금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Investopia, “Gearing Ratios: Definition, Types of Ratios, and How To Calculate,” <https://www.investopedia.com/terms/g/gearingratio.asp>, 검색일자: 2023. 4. 1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의 공개 초안을 발표함⁵⁶⁾

- 법인세 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관련 지급액이 그 대상이 되며, 2023년 7월부터 발효됨
- 이와 같은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필수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호주 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 및 과세 기반을 보장하고자 함

■ 다만, 추후 OECD의 필라 2 조치가 발효된다면 본 무형자산 비공제 조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중복 과세의 성격을 지닐 수 있음⁵⁷⁾

- 법안 내에 OECD 필라 2 조치에 근거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될 때 본 조치가 해제되는 언급이 없어 중복 과세 가능성이 존재함
- 글로벌 최저한세 15%는 EU 전역과 영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2024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는 아직 이와 관련한 조치는 발표하지 않음

■ 본 공개 초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56) Australian Government – The Treasury, “Multinational tax integrity – denying deductions for payments relating to intangible assets connected with low corporate tax jurisdictions,”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3-382169>, 검색일자: 2023. 4. 18.

57) Bloomberg Tax, “Australia’s Proposed Intangibles Tax At Odds With Global Rul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55R1DPC000000?bc=W1siU2VhcmNol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dWx0cy85ZTRkZjlyNDE0YjYyNjNhMGFjMjRkNjA4ODc3MjA2NyJdXQ--969f1c2775a0648326c5718b62746ed17c7be80c&criteria_id=9e4df22414b6263a0ac24d6088771067, 검색일자: 2023. 4. 18.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및 의회, 재생에너지 지침¹⁾ 개정안에 잠정 합의(2023. 3. 30.)²⁾

- (배경) 2022년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환경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침 목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개월에 걸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현재 EU 재생에너지 비중은 21.8%(2021년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지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로 상향하고, 각 부문별 세부 목표에 잠정적으로 동의
 - 2030년까지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4.5%로 감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29%로 확대
 -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6%씩 높이고,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수소 중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³⁾로 생산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60%로 확대

- 이 합의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 비중을 2030년까지 23% 이하, 2035년까지 20%로 낮춘다는 조건하에 회원국의 RFNBO 의무 할당량을 20%로 낮출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건물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49%로 확대하고,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회원국별로 2026년까지 연간 0.8%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1%씩 점진적으로 확대
-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허가 절차 신속화

■ EU 집행위원회, 2022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2023. 4. 14.)⁴⁾

※ 3년마다 발간되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EU 회원국의 단·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의 매년 중간 업데이트 보고서

- (부채 전망) EU 및 유로지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22년에 각각 86.0%, 93.6%에서 2033년에 87.6%, 95.9%로 증가 전망⁵⁾

1) 재생에너지 지침(2018/2001/EU)은 EU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EU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이후 2018년 한차례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짐.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송 부문과 냉난방뿐만 아니라 일반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2) EU 이사회,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deal on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23. 3. 3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3/30/council-and-parliament-reach-provisional-deal-on-renewable-energy-directive/>, 검색일자: 2023. 4. 12.

3) RFNBO(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는 ①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와 물에서 파생된 열 또는 전기형태의 순수한 수소 또는 ② 화석연료, 직접공기포집(DAC) 기술, 기타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으로부터 나온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파생된 액체 및 기체 연료 또는 ③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포획된 질소와 결합된 수소로부터 파생된 액체 및 기체 연료를 일컫음

4) EU 집행위원회,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 2023. 4. 14.,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ebt-sustainability-monitor-2022_en 검색일자: 2023. 4. 20.

5)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2033년까지 2024년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와 성장률 차이(r-g)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가정하며, 고령화지출 영향은 배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단기 지속가능성)⁶⁾ EU 27개국의 전반적인 단기 재정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나,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성이 있음
 - 6개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단기 ‘총자금조달 필요(gross financing needs)⁷⁾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높아진 국채 금리와 부채 만기 연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기 지속가능성)⁸⁾ 9개국이 고위험, 10개국이 중위험, 8개국이 저위험 국가로 평가
 -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이미 부채비율이 높았거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들이 고위험 국가에 해당
- (장기 지속가능성)⁹⁾ 7개국이 고위험, 12개국이 중위험, 8개국이 저위험 국가로 평가되며, 특히 고령화 지출의 증가 전망이 큰 위험 요소로 작용
 - 2070년까지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연금 지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위험 국가로 분류
- 지난 2021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SR)¹⁰⁾

<표 1>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국가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저	고	고
불가리아	저	저(중)	중
체코	저	중	중(고)
덴마크	저	저	저
독일	저	중	중
에스토니아	저	저	저
아일랜드	저	저	중
그리스	저(고)	고	저(중)
스페인	저	고	중(고)
프랑스	저	고	중
크로아티아	저	고	중
이탈리아	저	고	중(고)
사이프러스	저(고)	중	저
라트비아	저	저	저
리투아니아	저	저	저
룩셈부르크	저	저	고
헝가리	저	고(중)	고
몰타	저	중(고)	고
네덜란드	저	중	고(중)
오스트리아	저	중	중
폴란드	저	중(저)	중
포르투갈	저	고	저(중)
루마니아	저	중(고)	중(중)
슬로베니아	저	중(고)	고
슬로바키아	저	고	고
핀란드	저	중	중
스웨덴	저	저	저

주: 1. () 안은 2021 재정지속가능성보고서(FSR) 분류 결과(이번 보고서에서 달라진 경우)

2. 단기 분석은 S0 지표, 중기 분석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 장기 분석은 DSA 분석과 S2 지표로 판단

출처: EU 집행위, Debt Sustainability Report 2022, 2023, Table 1.

- 6)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지표인 S0 지표는 12개의 재정변수(재정수지, 총부채, 부채 변화율, 총자금조달 필요 등)와 13개의 금융 관련 변수(순국채투자 지위, 민간부문 부채, 단기 가계부채, 단위당 명목 노동비용, 실질 GDP 성장률 등)로 구성되며, 세부 지표들을 통해 단기 재정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행이 필요한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함
- 7) 기초재정수지 적자액 + 이자 지급 + 채무 상환금 + 채무수지 조정(SFA, stock-flow adjustment)
- 8) 중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분석과 S1 지표로 파악하며, S1 지표는 중기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측정.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하여 15년 내에 GDP 대비 부채비율 60%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5년 누적)의 조정 규모
- 9) 장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2 지표로 파악하고,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달성과 관련이 있음. 예산제약은 장기적(무한 기간)으로 미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부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이 조건에서 정부 부채가 장기적으로(2070년까지) 안정화되어야 함. S2 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 규모를 측정
- 10) 2022년 4월 발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를 참고

와 비교하면 단기 위험이 개선되었으나, 중장기 위험은 대체로 유지

■ EU 통계청, 2022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3. 4. 21.)¹¹⁾

- (재정수지) 유로지역¹²⁾과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4.7%, -4.5%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악화

- 재정수지 악화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며,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2022년 3분기 및 4분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침

- (정부부채)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22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91.6%, 84.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4%p, 1.1%p 하락

- GDP 규모 증가분이 부채 증가분보다 크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중이 하락

-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71.3%), 이탈리아(144.4%), 포르투갈(113.9%)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8.4%), 불가리아(22.9%), 룩셈부르크(24.6%) 순

<표 2>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1 Q4	2022 Q3	2022 Q4
유로지역 19개국	재정수지	-3.3	-4.6	-4.7
	정부수입	48.3	47.1	46.9
	정부지출	51.6	51.7	51.6
	정부부채	95.5	93.0	91.6
EU 27개국	재정수지	-3.1	-4.2	-4.5
	정부수입	47.6	46.4	46.3
	정부지출	50.7	50.6	50.7
	정부부채	99.0	85.1	84.0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장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7%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5% of GDP in the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62/2-21042023-CP-EN.pdf/6eb53445-39b1-cd7a-0ab2-4cb14f298a5b>, 검색일자: 2023. 4.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1.6% of GDP in euro areaDown to 84.0% of GDP in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59/2-21042023-BP-EN.pdf/282de4e3-e6f2-0571-a5da-6eb8391788f5>, 검색일자: 2023. 4. 24.



IMF

■ IMF, 세계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3. 4. 11.)¹³⁾

- (동향)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은 2023년 2.8%, 2024년 3.0%로 안정화되는 것이었으나

1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7%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5% of GDP in the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62/2-21042023-CP-EN.pdf/6eb53445-39b1-cd7a-0ab2-4cb14f298a5b>, 검색일자: 2023. 4.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1.6% of GDP in euro areaDown to 84.0% of GDP in EU," 2023. 4.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6349859/2-21042023-BP-EN.pdf/282de4e3-e6f2-0571-a5da-6eb8391788f5> 검색일자: 2023. 4. 24.

12)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를 포함하며, 2023년 1분기 통계부터는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0개국의 통계를 발표할 계획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A Rocky Recovery*, 2023. 4. 1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4/11/world-economic-outlook-april-2023>, 검색일자: 2023. 4. 13.

<표 3> 2023년 4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1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세계경제	3.4	2.8	3.0	-0.1	-0.1	0.1	-0.2
선진국	2.7	1.3	1.4	0.1	0.0	0.2	-0.2
미국	2.1	1.6	1.1	0.2	0.1	0.6	-0.1
유로지역	3.5	0.8	1.4	0.1	-0.2	0.3	-0.4
독일	1.8	-0.1	1.1	-0.1	-0.3	0.2	-0.4
프랑스	2.6	0.7	1.3	0.0	-0.3	0.0	-0.3
이탈리아	3.7	0.7	0.8	0.1	-0.1	0.9	-0.5
스페인	5.5	1.5	2.0	0.4	-0.4	0.3	-0.6
일본	1.1	1.3	1.0	-0.5	0.1	-0.3	-0.3
영국	4.0	-0.3	1.0	0.3	0.1	-0.6	0.4
캐나다	3.4	1.5	1.5	0.0	0.0	0.0	-0.1
기타 선진국 ²⁾	2.3	1.8	2.2	-0.2	-0.2	-0.5	-0.4
한국	2.6	1.5	2.4	-0.2	-0.2	-0.5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0	3.9	4.2	-0.1	0.0	0.2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4.4	5.3	5.1	0.0	-0.1	0.4	-0.1
중국	3.0	5.2	4.5	0.0	0.0	0.8	0.0
인도 ³⁾	6.8	5.9	6.3	-0.2	-0.5	-0.2	-0.5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0.8	1.2	2.5	-0.3	-0.1	0.6	0.0
러시아	-2.1	0.7	1.3	0.4	-0.8	3.0	-0.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4.0	1.6	2.2	-0.2	0.1	-0.1	-0.2
유럽연합	3.7	0.7	1.6	0.0	-0.2	0.0	-0.5
아세안-5 ⁴⁾	5.5	4.5	4.6	0.2	-0.1	0.0	-0.3
저소득 개도국	5.0	4.7	5.4	-0.2	-0.2	-0.2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5.1	2.4	3.5	0.0	0.1	-0.1	-0.2
수입							
선진국	6.6	1.8	25.7	-0.1	0.2	-0.2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5	3.3	5.1	0.2	0.7	0.3	0.4
수출							
선진국	5.2	3.0	3.1	0.4	0.2	0.5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1.6	4.3	-0.6	-0.4	-1.3	-0.2
원자재 가격(달러)							
오일 ⁵⁾	39.2	-24.1	-5.8	-7.9	1.3	-11.2	0.4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7.4	-2.8	-1.0	3.5	-0.6	3.4	-0.3
소비자물가⁶⁾							
선진국	8.7	7.0	4.9	0.4	0.6	0.5	0.8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7.3	4.7	2.6	0.1	0.0	0.3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9.8	8.6	6.5	0.5	1.0	0.5	1.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3. 2. 15.~2023. 3. 15.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규모 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 1) 2023년 1월 WEO 업데이트 및 2022년 10월 WEO 예측에 대한 반올림한 수치에 기초한 차이
- 2) G7과 유로지역 국가 제외
-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 평균가격은 96.36달러
- 6)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5.3%, 2.9%, 일본 2.7%, 2.2%, 미국 4.5%, 2.3%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2023. 4. 11., Table 1.1, Table A2(한국 수치 참조)

최근 금융 부문의 불안으로 세계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잠정적 신호가 희미해짐

-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감소하였지만, 노동시장이 긴축적(tight)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물가압력은 지속되고 금융상황은 심리변화에 따라 변동함

- (전망) 최근 발생한 금융 부문의 불안(stress)이 억제되었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에서 2023년 2.8%로 감소한 후 천천히 회복하여 5년 후 3.0%에 도달할 것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5%, 2024년 2.4%를 기록할 전망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융 부문에 추가적인 불안(stress)이 발생한다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5%, 선진국은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22년 8.7%에서 2023년 7.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지수는 하락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 (위험) 2022년 세계경제에 영향을 준 주요 위험요인들은 강도에 차이는 있으나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응 능력은 이전보다 제한적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지정학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방위험은 계속되고 있음

- (정책권고) 국가는 재정의 완충 역할을 재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국제사회는 다가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력해야 함

- 국가는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부채 취약성을 줄여 미래의 충격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위험 기반 재정 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함

- 중장기적 성장,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기후 변화 비용 감축 등 보다 탄력적인 세계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임

- 경제가 취약한 국가를 위한 부채해결 및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 등 국제 금융지원이 시급하며 부채탕감 등 국가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3. 4. 12.)¹⁴⁾

- (동향) 현재 대부분 재정정책이 정상화되고 가계와 경제의 회복력으로 세계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계비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금융 불안정 등의 위험에 직면

- 2020년 시작된 팬데믹 관련 특별 지원조치가 2022년 만료되었으며, 물가상승과 맞물려 거의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모두 긴축으로 전환

14) IMF, *Fiscal Monitor April 2023: On the Path to Policy Normalization*, 2023. 4. 1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3/04/03/fiscal-monitor-april-2023>, 검색일자: 2023. 4. 17.

<표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정수지							
세계경제	-4.7	-5.0	-4.6	-4.5	-4.3	-4.2	-4.2
선진국	-4.3	-4.4	-4.2	-4.1	-3.9	-3.8	-3.9
캐나다	-0.7	-0.4	-0.4	0.3	-0.2	-0.1	0.0
유로지역	-3.8	-3.7	-2.8	-2.3	-2.1	-2.0	-1.9
프랑스	-4.9	-5.3	-4.8	-4.5	-4.1	-3.9	-4.0
독일	-2.6	-3.7	-1.9	-0.9	-0.7	-0.5	-0.5
이탈리아	-8.0	-3.7	-3.3	-2.3	-1.8	-1.3	-0.7
스페인 ¹⁾	-4.5	-4.5	-3.5	-3.8	-4.0	-4.0	-4.0
일본	-7.8	-6.4	-4.0	-2.9	-3.1	-3.4	-3.7
영국	-6.3	-5.8	-4.4	-4.2	-3.9	-3.9	-3.7
미국 ²⁾	-5.5	-6.3	-6.8	-7.1	-6.9	-6.6	-6.8
기타선진국	0.2	0.7	0.7	0.7	0.7	0.6	0.6
한국	-0.9	0.0	-0.2	-0.1	-0.1	-0.1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2	-5.8	-5.3	-5.0	-4.8	-4.7	-4.7
국가채무							
세계경제 ³⁾	92.1	93.3	94.6	96.1	97.3	98.4	99.6
선진국	112.5	112.4	113.6	115.0	115.9	116.7	117.8
캐나다 ⁴⁾	106.6	105.1	102.2	99.2	96.2	93.6	91.1
유로지역	90.9	89.8	89.0	87.9	86.9	86.2	85.4
프랑스	111.1	111.4	112.4	112.8	113.3	114.2	115.0
독일	66.5	67.2	66.5	64.4	62.3	60.9	59.6
이탈리아	144.7	140.3	140.0	138.5	136.9	134.8	131.9
스페인	112.0	110.5	108.3	107.9	108.3	108.7	109.3
일본	261.3	258.2	256.3	257.6	259.2	261.5	264.0
영국	102.6	106.3	109.7	112.8	112.7	113.0	113.1
미국 ⁴⁾	121.7	122.2	125.8	129.1	131.8	134.0	136.2
한국	54.3	55.3	55.9	56.6	57.2	57.8	58.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4.6	67.5	39.8	72.2	74.3	76.3	78.1

주: 1. 모든 국가의 평균은 달러로 환산된 명목 GDP. 많은 국가들의 2022년 데이터는 잠정치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부채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계정 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부채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부채 불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부채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제외하도록 조정

출처: IMF, Fiscal Monitor April 2023, 2023. 4. 12.

- 경제 및 사회구조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견뎠으나 복합적인 충격들로 인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근절에 대한 글로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짐¹⁵⁾
 - (부채) 공공재정은 전례 없는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막대한 정부지원 투입으로 변동적
 - 정부의 예외적인 지원조치로 2020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약 100%까지 급증한 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적자가 점차 감소
 - 2021~2022년 명목 GDP 성장률이 증가하여 2022년 말 공공부채는 GDP의 약 92%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약 8%p 높은 수준
 - 부채와 재정적자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변화와 물가상승에서 기인하며, 2022년 선진국은 GDP의 3.1%,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2.5%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음
 - 초기 부채 수준이 높았던 국가는 명목 GDP가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1년에 10%p 이상 감소하였으나, 통화가치 하락, 금리상승, 물가상승으로 외화 부채비율이 높은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서 부채동학(debt dynamic)이 악화됨
 - (재정적자) 중기 재정적자는 향후 몇 년간 팬데믹 이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밀접한 연계 필요
 - 2023년에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임금 및 연금 등의 공공지출 증가 압력으로 세계 재정적자가 평균 GDP의 5%가량 증가할 전망
 - (정책권고) 정부는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부채 취약성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도전과제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과 금리인상 완화를 위해 통화 당국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취약한 경제를 위한 부채해결 및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 금융지원이 시급하며, 탄소세 및 보조금을 포함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발표 (2023. 4. 13.)¹⁶⁾
-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2023년 세계경제성장의 7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압박으로 세계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국내수요는 통화긴축에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4.6% 성장할 전망

15)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1은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극심한 빈곤 종식(By 2030, eradicate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이며 IMF는 세계은행의 전문지식과 조언을 기반으로 빈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빈곤완화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을 조성하여 운영

16)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Likely to See Dynamic Economic Growth, But with Policy Challenges," 2023. 4. 1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APAC/Issues/2023/04/11/regional-economic-outlook-for-asia-and-pacific-april-2023>, 검색일자: 2023. 4.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는 기술주기(technology cycle) 침체와 2022년 4분기 실적 부진에 기인함
- 중국의 경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 2023년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상대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일본의 경제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3년 1.3%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위험) 아태지역은 견고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상승, 금융불안, 부채 및 재정 위험, 중기적인 성장둔화의 위험요소 상존
 - 세계 원자재 가격과 식량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높음
 - 현재까지 금융 사태에 따른 불안은 아시아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 부문의 높은 레버리지 및 취약성에 대한 경계 필요
 - 공공부채는 팬데믹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화
 - 중국의 성장이 중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기적인 성장률은 감소할 전망
- (정책권고)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불안(stress) 요인을 면밀히 주시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를 분리하여 시행해야 함

-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과 정책금리는 긴축상태로 유지하고, 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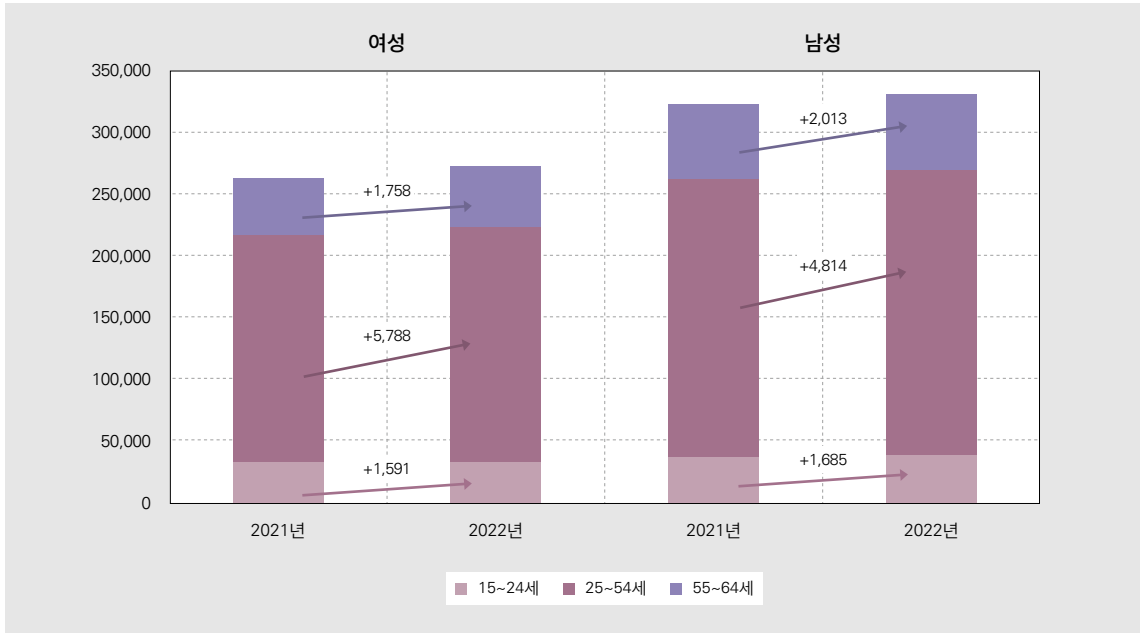
OECD

- OECD, 2022년 4분기 노동시장통계 발표(2023. 4. 13.)¹⁷⁾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4분기에 각각 69.6%와 73.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를 집계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절반에 이르는 OECD 회원국이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4분기 고용률은 유로지역과 유럽연합(EU)에서 70%에 가까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1.0%p 이상 감소
 - 2022년 고용자 수는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그림 1] 참조) 청장년 근로자(25~54세)와 고령 근로자(55~64세)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4분기 OECD 회원국 여성의 고용률은 6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성의 고용률은 76.7%로 최고 수준에서 3개월

17) OECD, "ELabour Market Situation," 2023. 4. 13.,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april-2023.html>, 검색일자: 2023. 4. 24.

[그림 1] OECD 회원국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고용 변화

(단위: 천명)



출처: OECD, "ELabour Market Situation," 2023. 4. 13., <https://www.oecd.org/newsroom/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april-2023.html>, 검색일자: 2023. 4. 24., p. 2, Figure 2.

<표 5>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Q4	2020	2021	2021		2022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68.9	66.0	67.7	68.1	68.6	69.0	69.5	69.5	69.6
G7	72.3	69.6	71.1	71.4	71.9	72.2	72.5	72.6	72.6
유럽연합	68.0	67.1	68.4	68.9	69.3	69.6	69.9	69.9	70.1
유로지역	68.5	66.6	67.9	68.3	68.8	69.3	69.6	69.4	69.6
호주	74.6	72.7	74.9	74.8	75.3	76.7	77.2	77.5	77.5
캐나다	74.1	70.1	73.5	74.0	75.1	75.3	75.8	75.5	75.8
프랑스	66.5	66.1	67.3	67.6	67.7	67.9	68.0	68.3	68.3
독일	75.8	76.2	75.8	76.4	76.8	77.1	77.3	77.2	77.3
이탈리아	59.0	57.5	58.3	58.8	59.4	59.5	60.2	60.1	60.7
일본	78.1	77.7	77.9	78.0	77.9	78.1	78.6	78.6	78.6
한국	67.0	65.9	66.5	66.8	67.2	68.0	68.6	68.7	68.7
스페인	63.4	61.0	62.7	63.4	63.9	64.1	64.7	64.6	64.3
영국	76.5	75.4	75.1	75.3	75.5	75.6	75.5	75.5	75.6
미국	71.7	67.1	69.4	69.8	70.5	71.0	71.3	71.4	71.4

주: 독일의 경우 LFS를 포함한 새로운 독일 통합 가구조사 시스템 도입 문제로 2020년 4분기 데이터는 LFS micro-data가 아닌 추가 기타 통합 가구조사 데이터임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3, April 2023, p. 4, Table 1.

연속 안정세를 보임

-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여성의 경우 최고 수준인 66%에 달했고 남성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6%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2023년 2월 실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 4.8%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
-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은 최저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OECD 회원국의 70% 이상에서 안정적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임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적연금 신탁이사회는 연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책을 제언하는 서한을 의회에 발신

* 이는 미국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과 장애보험(DI) 기금의 결합을 가정하고,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으로 통칭하여 가상으로 결합된 기금의 재정현황 및 전망에 대해 표현한 것임²¹⁾

- 신탁이사회는 연간보고서에서 ① 즉각적이 고도 영구적으로 OASDI 보험료율을 과세대상 근로소득 대비 3.44%p 증가시키거나(현행 12.40 → 15.84%), ② 현행 지급되는 수혜분의 21.3%를 감소시키거나, ③ 두 방안의 조합 중 선택할 것을 제시



미국

■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이사회, 2023년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및 공적건강보험(medicare) 연간보고서 발표(2023. 3. 31.)^{18), 19), 20)}

- 미국의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의 신탁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매년 의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 기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 제언
- 미국의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애보험

● 미국 공적연금의 노령·유족보험(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75년간 OASI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²²⁾는 과세대상 근로소득(taxable payroll)의 3.62%
- OASI 기금 고갈 시 연금의 급여액은 현재 대비 77%로 전망되며, 2097년에는 현재 대비 71% 급여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18) 미국 공적연금 신탁위원회, "The 202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2023/tr2023.pdf>, 검색일자: 2023. 4. 24.

19) 미국 연방 의료보험 신탁위원회, "202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23. 3. 31., <https://www.cms.gov/oact/tr/2023>, 검색일자: 2023. 4. 24.

20)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3 ANNUAL REPORT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SUM/tr23summary.pdf>, 검색일자: 2023. 4. 24.

21) 미국의 공적연금은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과 장애보험(DI) 기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기금은 법적으로 분리된 기금임

22) 미국의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기금의 재정수지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계리적 수지(actuarial balance)가 사용되었으며, 과세대상 근로소득(taxable payroll) 대비 비율로 나타냄. 연도별 계리적 수지의 평균으로 기금의 재정수지를 표현함(계리적 수지 = (기금 적립금 +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가) -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

〈표 6〉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기금 현황 및 장기전망

(단위: 억달러, %)

구분		공적연금			공적건강보험	
		노령·유족·장애보험 (OASDI)	노령·유족보험 (OASI)	장애보험 (DI)	병원보험 (HI)	추가 의료보험 (SMI)
현황	수혜범위		은퇴자	장애인	입원환자	외래환자
	최초 적자 발생연도	2021년	2021년	-	2025년	-
	기금 적립금(2022년 말)	28,299	27,119	1,180	1,966	2,126
	2022년 기금수입	12,218	10,567	1,651	3,966	5,919
	2022년 기금지출	12,440	10,975	1,465	3,427	5,624
	2022년 기금 적립금 변화분	-221	-407	186	539	295
전망	기금 고갈 시점	2034년	2033년	-	2031년	-
	2023-2097년 재정수지 적자(%)	-3.61	-3.62	0.01	-0.62	-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	80	77	-	89	-
	수혜 비율(%)	2097년	74	71	100	96

주: 1. 장애보험(DI) 기금은 2097년까지 연간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추가의료보험(SMI) 기금은 정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지출 전망에 맞추어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재정전망 논의에서 제외됨

출처: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3 ANNUAL REPORTS," 2023. 3. 31., <https://www.ssa.gov/oact/TRSUM/tr23summary.pdf>, 검색일자: 2023. 4. 24.

- 미국 공적건강보험의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기금은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75년간 HI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0.62%
 - HI 기금 고갈 시 보험금은 현재 대비 89% 급여 가능하며, 2097년에는 현재 대비 96% 급여 가능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발표 (2023. 4. 19.)^{23), 24)}
 - (경제활동)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최근 몇 주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됨
 - 9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약간(slightly) 변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3개의 지역에서는 완만하게(modest) 성장한 것으로 보고됨
 - 완만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소비지출은 보험세이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임
 -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제조활동은 보험세이거나 하락세를 보임
 - 대출 규모와 수요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감소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보고됨

23)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2. 27.~2023. 4. 10. 기간의 데이터를 반영

24) 미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4. 1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419.pdf, 검색일자: 2023. 4.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노동시장) 고용률 증가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지난 서베이 기간보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보고됨
 - 소수의 기업이 대량 해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기업임
 - 다른 기업들은 자연적 감축(natural attrition)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원만을 고용
 -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유지율 또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됨
 - 임금 수준은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물가)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물가는 보통수준으로(moderately)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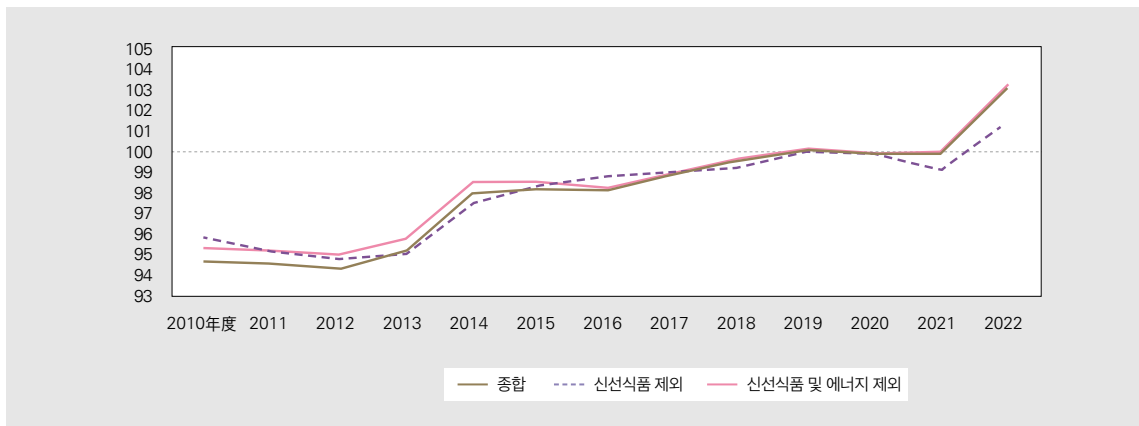
- 비노동 투입요소(nonlabor inputs)의 가격은 완만 내지 급격(modest-to-sharp)하게 감소하였으며, 수송비용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완제품의 생산자가격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약간 감소
- 높은 수준의 수요, 재고량, 노동비용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



-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2 회계연도²⁵⁾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4. 21.)²⁶⁾
 - 2022 회계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그림 2]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p. 4, 그림 7, 2023. 4. 21.

25) 일본의 2022 회계연도는 2022. 4. 1.~2023. 3. 31.

26)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2023. 4. 21.,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nendo/pdf/zen-nd.pdf#page=4>, 검색일자: 2023. 4. 21.

<표 7>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100,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종합	지수	94.7	94.6	94.4	95.2	98.0	98.2	98.2	98.9	99.6	100.1	99.9	100.0	103.2
	전년 대비 상승률	-0.4	-0.1	-0.3	0.9	2.9	0.2	-0.1	0.7	0.7	0.5	-0.2	0.1	3.2
신선식품 제외	지수	95.3	95.2	95.0	95.8	98.5	98.5	98.2	98.9	99.7	100.3	99.9	99.9	103.0
	전년 대비 상승률	-0.8	0.0	-0.2	0.8	2.8	0.0	-0.2	0.7	0.8	0.6	-0.4	0.1	3.0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95.8	95.2	94.8	95.0	97.5	98.4	98.8	99.0	99.3	100.0	100.0	99.2	101.4
	전년 대비 상승률	-1.1	-0.6	-0.5	0.2	2.6	1.0	0.3	0.2	0.3	0.6	0.1	-0.8	2.2

주: 통계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지수의 기준 연도인 2020년은 역년 기준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 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3年(令和5年)3月分及び2022年度(令和4年度)平均」, p. 4, 표 7, 2023. 4. 21.

대비 3.2% 상승한 103.2를 기록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3.0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4로 전년 대비 2.2% 상승

- (경제성장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그룹의 2023년 봄 공동 경제전망에 따르면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2023년에 0.3%, 2024년에 1.5% 증가할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0.7%p 상향 조정,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4%p 하향 조정됨
 - 공급 병목현상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향후 경제활동 증가에 기여하고 실질임금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민간 소비도 향후 경제 확장에 기여할 전망



독일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3년 봄 공동 경제전망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²⁷⁾ 발표(2023. 4. 5.)²⁸⁾

27)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28) Gemeinschaftsdiagnose,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 Gemeinschaftsdiagnose #1-2023*, 2023,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GD_1_2023.pdf, 검색일자: 2023. 4. 11.; _____,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3/04/05/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3-inflation-im-kern-hoch-angebotskraefte-jetzt-staerken/>, 검색일자: 2023. 4. 11.; _____,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보도자료,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iwh-press-release_2023-08_Gemeinschaftsdiagnose_1-23_de.pdf, 검색일자: 2023. 4. 11.;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3: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2023. 4. 5., <https://www.ifo.de/fakten/2023-04-05/gemeinschaftsdiagnose-fruehjahr-2023-inflation-im-kern-hoch>, 검색일자: 2023. 4. 11.

<표 8> 독일의 2023년 봄 공동 경제전망

(단위: %, 천명, 십억유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3.7	2.6	1.8	0.3	1.5
취업자 수(천명)	44,915	44,980	45,570	45,900	45,963
실업률	5.9	5.7	5.3	5.4	5.3
소비자물가상승률	0.5	3.1	6.9	6.0	2.4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147.6	-134.3	-101.3	-90.8	-39.9
(GDP 대비 %)	-4.3	-3.7	-2.6	-2.2	-0.9
경상수지(십억유로)	238.7	265.0	145.1	232.2	257.5
(GDP 대비 %)	7.0	7.4	3.8	5.7	6.0

출처: Gemeinschaftsdiagnose, "Inflation im Kern hoch - Angebotskräfte jetzt stärken," 보도자료, 2023. 4. 5.,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4/iwh-press-release_2023-08_Gemeinschaftsdiagnose_1-23_de.pdf, 검색일자: 2023. 4. 11.

- 반면 건설 부문의 생산은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 둔화 예상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6.9%에서 2023년에 6.0%로 서서히 하락하고, 2024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2.4%로 더욱 하락할 전망
 - 당분간 수요 측면 물가상승 압력 지속, 정부 지원 조치 및 높은 임금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충분한 하락에는 시간이 걸리며, 내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완화될 전망
 - (노동시장) 우크라이나 난민의 취업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업자 수는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내년에 다시 감소할 전망
 - 취업자 수는 2022년 약 4,560만명에서 2023년에 4,59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정책이 당분간 확장적으로 유지되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2%로 예상
 - 내년에 재정정책이 보다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0.9%로 감소할 전망
 - (경상수지) 지난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GDP 대비 경상수지가 2024년에 6.0%로 다시 상승할 전망
 - (위험요인) 국제 금융 부문의 혼란, 높은 물가상승에 대한 가계 반응의 불확실성, 동계 천연가스 수급 등을 경제전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독일 연방내각, 건축물에너지법 개정안에 합의 (2023. 4. 19.)²⁹⁾
- (개요) 독일 연방내각은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

29)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Novelle des Gebäudeenergiegesetzes - Umstieg auf Heizen mit Erneuerbaren eingeleitet," 2023. 4.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4/20230419-bundeskabinett-beschliesst-novelle-des-gebaeudeenergiegesetzes.html>, 검색일자: 2023. 4. 24.; _____, "Bundesregierung einigt sich auf neues Förderkonzept für erneuerbares Heizen," 2023. 4. 1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4/20230419-bundesregierung-einigt-sich-auf-neues-foerderkonzept-fuer-erneuerbares-heizen.html>, 검색일자: 2023. 4. 24.

를 위해 건축물에너지법 개정안에 합의

- (개정안) 2024년부터 건물에 신규 난방시스템 설치 시 최소 65%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기존 난방시스템(가동 후 30년 미만)의 경우 즉각적 교체 의무는 없지만, 수리 불가능한 고장으로 교체 필요시 3년의 전환 기간을 적용
 - 80세 이상 고령의 소유주, 저소득가구(소득 및 건물 가치 대비 투자 비율 등 고려) 등은 적용 면제
- (자금 지원) 기후 친화적인 난방시스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기금에서 보조금을 제공
 - (기본 보조금) 기존의 '에너지 효율적 건물에 대한 연방 지원 자금' 제도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거용 건물 내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을 기후 친화적 난방시스템으로 교체 시 30%의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지속가능한 난방시스템으로 빠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도 지급
 - 예외대상에 해당하여 구형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의무가 없으나 교체한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가 난방시스템을 교체한 경우 등에 최대 2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
 - 난방시스템 교체 의무가 있고 기한 전에 난방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더 높은 재생에

너지 비율의 난방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10%의 추가 보조금 지원

- 30년 미만의 난방시스템에 수리 불가능한 고장이 있는 경우, 1년 내 65% 비율을 준수해 난방시스템을 교체하면 1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
- (기타) 보조금 외에도 난방시스템 교체 시 처리 대출, 조세 감면 등의 혜택 제공

■ 독일 연방 및 주정부, 난방유, 목재 펠릿 등 기타 에너지원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에 합의 (2023. 3. 30.)³⁰⁾

- (지원 배경) 독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에너지 가격 상한제³¹⁾를 운영 중이며, 가스 및 지역난방 이외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지원 내용) 연방정부는 난방유, 목재 펠릿 등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연방정부-주정부 간 행정 협정에 합의
 - (지원 조건) 해당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2022년 청구서(2022년 1월 1일 ~ 12월 1일 기간)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 (지원 금액) 2022년 추가 에너지 비용(2021년

30)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Härtefallhilfen für Privathaushalte kommen – Bund stellt 1,8 Mrd. Euro bereit – Bund und Länder einigen sich auf Verwaltungsvereinbarungen," 2023. 3. 30.,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3/20230330-haerterfallhilfen-fur-privathaushalte-kommen.html>, 검색일자: 2023. 4. 11.

31)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2023년 1월부터 소급)까지 가계 및 기업이 사용하는 일정 기준 이내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1월호, 2022. 참고

<표 9> 독일의 2022년 공공채무(잠정치)

(단위: 백만유로)

시점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2019. 12. 31.	1,189,121	579,136	130,787	124	1,899,168
2020. 12. 31.	1,403,417	635,832	132,496	54	2,171,798
2021. 12. 31.	1,548,469	638,250	133,152	41	2,319,911
2022. 12. 31.	1,620,357	606,750	140,107	36	2,367,251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Finanzen und Steuern - Vorläufiger Schuldenstand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 4. Vierteljahr 2022," 2023. 3. 29.,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vorl-schulden-oeffentlicher-haushalte-2140520223244.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3. 4. 11.

기준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의 80%를 환급하여 가구당 최대 2,000유로를 지급

- (기준가격(안)) 에너지원별 기준가격³²⁾은 난방유 71센트/ℓ, LPG 57센트/ℓ, 목재 펠릿 24센트/kg, 장작 85유로/m³, 석탄 36센트/kg 등임
- (지원 규모) 연방정부가 경제안정화기금을 통해 최대 18억유로의 자금을 지원

부와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감소

- 2022년 말, 연방정부 채무는 1조 6,204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6%(719억유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 거의 모든 주(Saxony-Anhalt주 제외)에서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주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5.0%(317억유로) 감소한 6,068억유로를 기록

■ 독일 연방통계청, 2022년 공공채무 잠정실적 발표(2023. 3. 29.)³³⁾

- 2022년 말, 독일의 공공채무는 2조 3,673억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잠정치 기준)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461억유로), 직전 분기 대비 1.8%(419억유로) 증가한 수치임
 - 전년 대비 2022년 부문별 채무 규모는 연방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증가한 반면 주정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2년 결산보고서(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PLR2022) 발표(2023. 4. 13.)³⁴⁾

32) 연방 및 주정부가 결정

33)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steigen Ende 2022 auf neuen Höchststand von rund 2,37 Billionen Euro," 2023. 3. 29.,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3/PD23_122_713.html, 검색일자: 2023. 4. 11.

34)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règlement du budget et d'approbation des Comptes de l'État pour 2022," 2023. 4. 13.,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ojet-de-loi-de-reglement-du-budget-et-dapprobation-des-comptes-de-letat-0>, 검색일자: 2023. 4. 24.

<표 10> 프랑스 중앙정부 2022년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A)	2022 본예산 (B)	2022 수정예산 (C)	2022 결산 (D)	D-A	D-B	D-C
재정지출(Depenses BG + PSR)	488.5	461.5	514.8	505.4	16.9	43.9	-9.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7	287.6	315.8	323.3	27.5	35.7	7.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1.3	20.2	24.7	23.9	2.7	3.8	-0.8
특별회계(Solde comptes spéciaux)	0.8	-0.1	3.0	6.7	5.9	6.8	3.7
부속예산(Solde budget annexes)	0.0	0.0	0.3	0.0	0.0	0.0	-0.3
총재정수지(Solde état)	-170.7	-153.8	-171.0	-151.4	19.3	2.4	19.5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p. 14, 2023. 4. 13.

- 프랑스는 2022년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지속
 - 2020년 급격한 경기침체 이후 2021년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공급 측면의 긴장 및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조치가 점진적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매력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 2022년 재정적자는 2022년 본예산 전망 대비 24억유로 개선, 2021년 결산 대비 193억유로 개선된 1,514억유로
 - 2022년 재정지출은 본예산 전망 대비 439억유로 높은 5,054억유로
 - 2022년 재정수입은 본예산 전망 대비 395억

유로 높은 3,472억유로

-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111.6%로 2021년 112.9% 대비 다소 감소

[기타]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2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23. 3. 28.)³⁵⁾
 - 2022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6.5%에서 1.8%p 감소한 4.7%(1,249억유로)
 - 재정지출보다 재정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
 - 2022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조 5,362억유로이며,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1년 59.1%에서 2022년 58.1%로 감소함
 - 2022년 재정수입은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35) 프랑스 통계청, "INFORMATIONS RAPIDES No. 75," 2023. 3. 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233185>, 검색일자: 2023. 4. 5.

<표 11>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지 (Déficit public)	-3.1	-9.0	-6.5	-4.7
재정지출 (Dépenses publiques)	55.4	61.3	59.1	58.1
재정수입 (Recettes publiques)	52.3	52.4	52.6	53.4
일반정부 총부채 (Dette publique (brute))	97.4	114.6	112.9	111.6
일반정부 순부채 (Dette publique nette) ¹⁾	88.9	101.2	100.3	101.0
조세부담률 (Prélèvements obligatoires) ²⁾	43.8	44.3	44.3	45.3

주: 1)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 75," 2023. 3. 28.

7.3% 증가한 1조 4,114억유로이며,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1년 52.6%에서 2022년 53.4%로 증가

- 2022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부채는 111.6%로 전년 대비 1.3%p 감소

■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법안 합헌 결정 (2023. 4. 14.)³⁶⁾ 및 법률 공포(2023. 4. 15.)³⁷⁾

- 헌법위원회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의 연금 개혁안을 담은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안의

핵심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발표

- 합헌 결정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며 사회보장 부문 수정예산법이 공식 공포되어 9월부터 시행될 예정



영국

■ 영국 에너지 안보·탄소중립부, 에너지 혁명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2023. 3. 30.)³⁸⁾

-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에너지 도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
 - 이에 수십 년 동안 값비싼 외국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했던 영국은 저렴하고 깨끗한 국내 생산 전력을 확대하고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 (주요 정책) 탄소 포집·저장·활용과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재생 가능 전력, 투자유치 프로세스 개혁, 전기 자동차 인프라 등과 관련해 투자를 계획
 - 탄소 포집·저장·활용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포집 클러스터 조성을 위

36) 프랑스 헌법위원회,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 4. 14.,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loi-de-financement-rectificative-de-la-securite-sociale-pour-2023>, 검색일자: 2023. 4. 24.

37)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1)," 2023. 4. 1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7445077>, 검색일자: 2023. 4. 24.

38)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Shapps sets out plans to drive multi billion pound investment in energy revolution,"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shapps-sets-out-plans-to-drive-multi-billion-pound-investment-in-energy-revolution>, 검색일자: 2023. 4. 4.

- 한 협상을 진행하고, 2개의 추가적인 미래 클러스터 선정을 위한 라운드를 시작
-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000만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유식 해상풍력³⁹⁾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
 - 에너지 효율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 비용을 절감
 - ECO+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주택 30만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
 - 영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 성장 부문 등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인 영국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에 100억파운드의 추가 역량 부여
- (투자 규모) 2010년부터 영국은 정부 자금, 민간 투자, 소비자 부과금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에 1,980억파운드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혁명에 약 1,000억파운드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영국 최저임금위원회(LPC), 최저임금⁴⁰⁾ 인상 발표(2023. 3. 31.)⁴¹⁾
- 23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생활임금은 10.42파운드로 전년 대비 9.7% 인상, 21~22세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은 10.18파운드로 전년 대비 10.9% 인상
 - 견습생⁴²⁾의 최저임금은 5.28파운드로 전년 대비 9.7% 인상
 -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소득 3분의 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목표⁴³⁾에 따른 것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1,600파운드 이상 증가하고, 200만명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영국 노동·연금부, 국가연금 연령 검토 보고서(State Pension Age Review) 발표(2023. 3. 30.; 2023. 4. 5.)⁴⁴⁾
- (배경) 노동·연금부 장관은 연금법(2014)(Pension Act 2014) 27조에 따라 연금개시 연령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
 - 첫 검토는 2017년 7월 시행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검토
 - (개요) 동 보고서는 기대수명 증가가 국가연금 지출과 생산가능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과 적절한

39)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는 방식

40) 영국의 최저임금은 연령구간과 견습생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법정생활임금은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23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

41) Low Pay Commission, "Largest ever cash increase in the National Living Wage to boost pay for millions," 2023. 3. 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rgest-ever-cash-increase-in-the-national-living-wage-to-boost-pay-for-millions>, 검색일자: 2023. 4. 4.

42) 특정 직업의 기술(skill)과 지식을 얻기 위해 근로와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유급 일자리

43)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4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tate Pension Age Review published," 2023. 3. 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pension-age-review-published>, 검색일자: 2023. 3. 30.;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State Pension age review" 2023. 4.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pension-age-review>, 검색일자: 2023. 4. 6.

한 시기 등에 대해 분석

-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지난 세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 속도는 둔화
- (예측) 1951년생 기준,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6.1세, 80.7세
 - 2020년생 기준으로는 각각 87.3세, 90.2세, 2070년생 기준으로는 각각 92.5세, 94.6세
- (영향)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출산율⁴⁵⁾ 감소의 결과, 2070년까지 연금 수급자는 500만명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1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예산책임청(OBR)은 2022년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⁴⁶⁾에서 국가연금 관련 지출⁴⁷⁾이 2021-22회계연도에 GDP 대비 4.8%에서 2071-72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8.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⁴⁸⁾
- 202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 1,000명당 연금 수급자 인구는 280명인데, 이 비율은 203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7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00명당 연금 수급자 인구는 39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영향 분석)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65→66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약 5만 5,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수준이 상승

- 반면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여 평균 가구소득이 감소하였고, 절대 빈곤율⁴⁹⁾은 연금개시 연령이 65세일 때와 비교해 약 13%p 증가
-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타임 테이블 분석)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타임 테이블의 적정성을 분석⁵⁰⁾한 결과, 정부는 현재 계획을 유지할 방침
 - 분석 결과, 성인 수명(adult life)⁵¹⁾ 중 31%를 은퇴 이후 보내는 경우, 연금개시 연령을 66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적정 시기는 2026~2028년으로 분석(<표 12> 참조)
 - 또한 동일한 가정하에서 연금개시 연령을 67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적정 시기는 2041~2043년으로 분석
 - 정부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6년과 2028년 사이에 66세에서 67세로, 2044년과 2046년 사이에 67세에서 68세로 연금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예정
 - 이번 분석은 팬데믹의 영향이나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포함한 장기적인

45) total fertility rate: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4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2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2.

47)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단일국가연금(Single-Tier Pension), 연금 크레딧, 동절기 연료 지급,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포함(연금 수급자 주거급여, 연금 수급자 장애급여는 미포함)

48) 연금개시 연령이 2026~2028년 67세, 2037~2039년 68세, 2071~2073년 69세로 상향 조정됨을 가정

49) absolute income poverty: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태

50) 연금법(2014)은 정부가 두 개의 독립적인 분석을 위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이에 정부 보험계리국(Government Actuary)과 Baroness Neville-Rolfe에게 독립적인 분석 보고서를 의뢰

51) 영국의 성인 기준은 18세 이상

<표 12> 영국의 연금개시 연령 상황 조정 타임 테이블 분석 결과

연금개시 연령 상황 조정	현행법	2017년 검토에서의 권고	은퇴 이후 성인 수명의 비중(Proportion of adult life in retirement)에 따른 연금개시 연령 조정 적정 시기		
			32%	31%	30%
66→67세	2026~2028년	2026~2028년	2037~2039년	2026~2028년	2023~2025년
67→68세	2044~2046년	2037~2039년	2053~2055년	2041~2043년	2030~2032년
68→69세	-	-	N/A	2058~2060년	2046~2048년
69→70세	-	-	N/A	N/A	2062~2064년

주: N/A는 해당 연금개시 연령 상황 조정이 예측기간(2070년) 이후 발생함을 의미

출처: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State Pension age Review 2023*, 2023, p. 23.

영향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에 추가적인 검토를 시행할 계획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연구·혁신 부문 지원 프로그램 “Pioneer” 발표(2023. 4. 6.)⁵²⁾

- (배경)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Horizon Europe”⁵³⁾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준비하였으나 가입이 지연
 - 가입이 지연되면서 연구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 일정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으로 “Pioneer” 프로그램을 마련
- (주요 내용) Pioneer 프로그램은 인재·연구 발굴(Pioneer Talent), 비즈니스 주도 혁신(Pioneer Innovation), 국제 협력(Pioneer Glob-

al), R&D 인프라(Pioneer Infrastructure)의 4개 부문에 약 146억파운드를 지원

- (인재·연구 발굴) 인재는 R&D 시스템의 기반으로 정부는 2027-28회계연도까지 20억 파운드를 지원
- (비즈니스 주도 혁신) 2027-28회계연도까지 35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국제적인 과학 협력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규제 및 정책 생태계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 (국제협력) 2027-28회계연도까지 38억파운드를 지원하여 광범위한 글로벌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넘어 국제적 협력을 심화하고 확장
- (R&D 인프라) 2027-28회계연도까지 17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공공 부문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연구조직 등의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 자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원

52)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UK publishes prospectus for opportunities beyond Horizon Europe,” 2023. 4.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publishes-prospectus-for-opportunities-beyond-horizon-europe>, 검색일자: 2023. 4. 17.

53) Horizon Europe(2021~2027): EU의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사업으로, 7년간 955억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 EU 비회원국은 준회원국 가입 요청과 EU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재정포럼

2023년 5월호 통권 제323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5월 15일 발행 / 통권 제32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